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04호)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7호)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9호)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22호)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60호)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69호)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50호)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84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검토의견	15
1. 종전 대안(의안번호 2205973)의 개요 및 처리 경과	15
2. 법률의 목적 수정	18
3. 농수산물물의 수급계획 수립 등	22
가. 농수산물물의 수급계획 수립	22
나. 그 외 자구정리 사항	29
4.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등	31
가.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31
나. 예시가격 결정의 심의 의무화 등	51
다. 유통조절명령의 심의 의무화	60
5. 계약생산 지원 및 손실 보전 등	66
가.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	66
나. 계약생산 이행에 대한 지원 및 손실 보전	73
다. 그 외 자구정리 사항	85

6. 농산물수급안정대책 등	87
가.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87
나.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95
다.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108
라. 그 외 자구정리 사항	119
7.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등	124
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124
나.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설치	153
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 추가 등	165
8. 수입비축사업의 사후관리	173
9. 보고의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186
10. 부칙: 시행일	194

I . 제안경위

1. 윤준병의원안(2209404)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3. 27.

다. 회 부 일 : 2025. 3. 28.

2. 문대림의원안(2209457)

가.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3. 28.

다. 회 부 일 : 2025. 3. 31.

3. 송옥주의원안(2209619)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4. 8.

4. 어기구의원안(2209622)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4. 8.

5. 문금주의원안(2209760)

가.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4. 11.

다. 회 부 일 : 2025. 4. 14.

6. 이원택의원안(2210169)

가.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28.

다. 회 부 일 : 2025. 4. 29.

7. 이병진의원안(2210250)

가.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30.

다. 회 부 일 : 2025. 5. 1.

8. 박수현의원안(2210484)

가. 제 안 자 : 박수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5. 12.

다. 회 부 일 : 2025. 5.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준병의원안(2209404)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 및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농산물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수매 농산물의 판매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
되,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대상 품목별 농산물의 해당 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
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
획을 세우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
진방향,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
산물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
조절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나.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수
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의5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
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
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와 협의하여 매년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 및 이행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 마.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농산물 기준가격의 100분의 5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수매 농산물의 판매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 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되,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대상 품목별 농산물의 해당 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9조의5 신설).
- 사.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2. 문대림의원안(2209457)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 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 등으로 계약한 수량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補填)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 다.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 선정, 품목별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라.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3. 송옥주의원안(2209619)

제안이유

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그 피해를 농가가 떠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나.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 다. 농산물의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시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 라.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 신설).

4. 어기구의원안(22096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 3 신설, 제10 등).

5. 문금주의원안(2209760)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

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6. 이원택의원안(2210169)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7. 이병진의원안(221025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구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

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 신설).

8. 박수현의원안(221048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생산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비자 역시 높은 물가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과 기금 조성·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종전 대안(의안번호 2205973)의 개요 및 처리 경과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16) 등 총 14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음.

동 대안은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¹⁾에 따른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음에 따라 소위원회 의결 당일 안전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날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를 통해 마련된 대안(의안번호 2205973)이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24년 12월 19일에 「대한민국헌법」 제53조²⁾에 따른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고,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됨.

1) 「국회법」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전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전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전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2)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종전 「농안법」 개정안 및 대안 심사이력 】

구분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자	제안일	위원회 회부일	심사결과		
						위원회	본회의	재의결
일 부 개 정 법 률 안	1	2200016	윤준병의원	24. 5. 30.	24. 6. 11.	대안반영폐기 24. 11. 21.	대안반영폐기 24. 11. 28.	-
	2	2200088	이원택의원	24. 6. 3.	24. 6. 11.			
	3	2200260	문금주의원	24. 6. 10.	24. 6. 11.			
	4	2200301	황명선의원	24. 6. 11.	24. 6. 12.			
	5	2200505	이병진의원	24. 6. 14.	24. 6. 17.			
	6	2200585	주철현의원	24. 6. 18.	24. 6. 19.			
	7	2201366	위성곤의원	24. 7. 4.	24. 7. 5.			
	8	2201501	문대림의원	24. 7. 8.	24. 7. 9.			
	9	2201530	서삼석의원	24. 7. 9.	24. 7. 10.			
	10	2201805	임미애의원	24. 7. 16.	24. 7. 17.			
	11	2201880	박수현의원	24. 7. 17.	24. 7. 18.			
	12	2202041	어기구의원	24. 7. 19.	24. 7. 22.			
	13	2202347	송옥주의원	24. 7. 29.	24. 7. 30.			
	14	2204538	이병진의원	24. 10. 4.	24. 10. 7.			
대안		2205973	농해수위 위원장	24. 11. 27.	-	(대안가결) (24. 11. 21.)	원안가결 24. 11. 28.	부결 25. 1. 8.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7.

종전 대안과 8건의 개정안이 각각 포함하는 사항을 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데, 특히 윤준병의원안이 종전 대안에 없던 ① 농수산물의 수급계획 수립과 ②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점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임.

【 종전 대안과 개정안의 포함 사항 비교 】

연번	목 차 명	종전 대안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이병진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1	법률의 목적 수정	●								●
2	농수산물의 수급계획 수립 등		●							
	① 농수산물의 수급계획 수립		○							
	② 그 외 자구정리 사항		○							
3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등	●	●			●		●		
	①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	○			○		○		
	② 예상가격 결정의 심의 의무화 등	○	○			○		○		
	③ 유통조절명령의 심의 의무화	○	○			○		○		
4	계약생산 지원 및 손실 보전 등	●	●		●	●		●		
	①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	○	○		○	○		○		
	② 계약생산 이행에 대한 지원 및 손실 보전	○	○		○	○		○		
	③ 그 외 자구정리 사항							○		
5	농산물수급안정대책 등	●	●		●	●		●		●
	①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②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	○		○	○		○		○
	③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	○		○	○		○		
	④ 그 외 자구정리 사항	○	○			○		○		
6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등	●	●	●	●	●	●	●		●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	○	○	○	○	○	○		○
	②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 설치	○		○	○	○	○	○		○
	③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 추가 등	○	○		○	○	○	○		
7	수입비축사업의 사후관리	●	●			●		●	●	
8	보고의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	●			●		●		
9	부칙: 시행일	●	●	●	●	●	●	●	●	●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7.

2. 법률의 목적 수정

박수현의원안은 법률의 목적 규정의 문언 중 “적정한 가격 유지”와 “생산자”를 각각 “가격 안정 도모”와 “농어민”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안 제1조).

현 행	박수현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u>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u>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종전 대안	⇒	박수현의원안	비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u>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u>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 목적을 개정하지 않은 종전 대안과 달리, 목적을 개정함

1)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내용이 현행 법률명과 부합하고, ‘가격 안정’은 ‘적정한 가격’이라는 모호한 표현보다 입법 취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안을 수용함.

(2) 해양수산물부

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목적 규정의 문언을 일부 수정하여 법령의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목적 달성의 수단 중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가격 안정의 도모’로, ② 목적 중 ‘생산자 이익 보호’를 ‘농어민 이익 보호’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법률 목적 변화 】

구분	현행	⇒	박수현의원안
수단	① 농수산물의 유통 원활 ② 적정한 가격의 유지	⇒	① 농수산물의 유통 원활 ② 가격 안정의 도모
목적	① 생산자 이익 보호 ② 소비자 이익 보호 ③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	⇒	① 농어민 이익 보호 ② 소비자 이익 보호 ③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

① 목적 달성의 수단 중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가격 안정의 도모’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의 제명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고, 법률 전반적으로도 ‘가격안정’이라는 표현이 다수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법률 제명과 띄어쓰기 방식에 맞추어 “가격 안정”을 “가격안정”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② 목적 중 ‘생산자 이익 보호’를 ‘농어민 이익 보호’로 변경하는 것은, 농어민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농안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서는 ‘농어민’ 또는 ‘농민·어민’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음.

한편,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으로는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의원안)”,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의원안)”, “농민기본법안(이병진의원안)” 및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안)” 등에서 ‘농어민’ 또는 ‘농민’을 정의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음.

이들 법률안에서는 농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어민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함.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농민과 어민은 대체로 농업과 어업을 주업 또는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농어민’과 현행법상 용어인 ‘생산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임.

다만, 소비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생산자’를 사용하는 편이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보다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점, ‘생산자’와 달리 ‘농어민’ 또는 ‘농민·어민’은 「농안법」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농수산물의 수급계획 수립 등

가. 농수산물의 수급계획 수립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5조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제5조(농수산물의 수급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재고량 관리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다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농수산물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농수산물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비고
<신 설>	⇒	<u>제5조(농수산물의 수급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u> <u>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u> <u>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u> <u>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u> <u>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다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농수산물에 관한 사항</u> <u>5.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u> <u>6.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농수산물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u>	- 신설 내용

1)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수급계획의 수립과 수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 각각에 대하여는 수용하되, 농수산물의 수요량이 아닌 소비량을 수급계획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수급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하여, 매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바, 수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립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수매·방출계획 등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은 수용함.

다만, 생산·물가 동향을 적시에 반영해야 하는 수급정책의 특성상, 대통령 승인 등의 엄격한 승인절차를 두는 것은 수용이 곤란함.

2) 검토의견

윤준병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의 계획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이는 수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전년도 결과를 반영하는 등 연차에 따른 점진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도 보임.

예를 들어 자급목표의 경우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에서 5년 주기 목표를 설정하는데,³⁾ 개정안에 따라서는 1년 주기 목표를 설정하게 되므로, 이를 중간목표와 같이 활용할 수 있어 보임.

【 '23~'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中 주요 자급목표 】

(단위: %)

연번	구분	식량	쌀	축산물	채소류	과일류
1	'21년 실적	44.4	84.6	68.6	91.1	75.4
2	'27년 목표치	55.5	98.0	66.5	89.6	75.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23. p. 15.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수급계획 수립의 절차를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함.

계획의 수립 시 이를 ① 관계기관이나 국무회의 등 정부 내부의 상급 기관에 보고·통보하도록 하거나 ② 일반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그 대상과 해당 정책의 방향·내용 및 변경사항을 공유하기 위함임.⁴⁾

개정안과 같이 계획 수립 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로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경우가 있음.⁵⁾

이는 정부관리양곡 매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상급 기관인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규정하고, 2024년 기준 국내 쌀 생산량의 15%를 정부관리양곡으로 매입하여⁶⁾ 쌀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4)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272.

5) 「양곡관리법」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6) 2024년 기준, 국내 쌀 생산량은 358만 5천톤인데, 이 중 53만 6천톤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관리양곡으로 매입함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에도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단순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그치지 않고, 국무회의와 대통령이 라는 상급기관을 거치도록 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은 정부관리양곡에 관한 사항에 그치는 “정부양곡수급계획”과는 달리 전체 농수산물에 대한 사항도 다수 포함하는 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수립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문제를 우려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수급계획 포함사항 중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에 대하여, 수급이 수요와 공급 각각을 의미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수요량’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상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다만, 실제 수요량 측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현행법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에서는 소비동향을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하는 점⁷⁾ 등을 고려하면, 수요량을 대신하여 ‘소비량’을 포함하도록 할 수도 있어 보임.

셋째, 윤준병의원안은 별도로 안 제9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해당 대책이 안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이와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⁸⁾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8)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분(6. 농산물수급안정대책 등)에서 다루도록 함.

넷째, 개정안의 자구 중 ① 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다른”은 “따
른”으로 오기로 보이고, ② 안 제5조제3항에서 “농산물수급계획”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오기로 보이므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그 외 자구정리 사항

윤준병의원안은 안 제5조를 새로이 신설함에 따라, 종전 ① 제5조, ② 제5조의2 및 ③ 제5조의3을 각각 ① 제5조의2, ② 제5조의3 및 ③ 제5조의4로 하여 조 번호를 수정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

현 행	윤준병의원안
<u>제5조(농림업관측)</u>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 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u>제5조의2(농림업관측)</u> ① ~ ⑤ (현행과 같음)
<u>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u>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5조의3(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윤준병의원안
<u>제5조의3</u>(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5조의4</u>(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비고
<u>제5조</u> (농림업관측) ① ~ ⑤ (현행과 같음)	⇒	<u>제5조의2</u> (농림업관측) ① ~ ⑤ (현행과 같음)	- 종전 대안은 조 번호를 개정하지 않았음 - 신규 개정 사항임
<u>제5조의2</u>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제5조의3</u>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제5조의3</u>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u>제5조의4</u>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는 이미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이 있음. 따라서 기존 세 조의 조 번호를 각각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로 수정하는 것은, 윤준병의원안을 수용하는 경우 새로이 안 제5조를 신설함에 따라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등

가.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현재 법률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은 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과 달리 위원회 명칭을 ‘수급조절위원회’가 아닌 ‘수급관리위원회’로 개칭함(윤준병의원안 제5조의5 신설, 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5조의4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신 설>	제5조의5(수급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관리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와 수산물수급관리위원회(이하 “수급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1. <u>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u> 2. <u>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u> 3. <u>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u> 4. <u>그밖에 이 법에서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 ③ <u>수급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각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④ <u>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u>	1. <u>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u> 2. <u>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u> 3. <u>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u> ③ <u>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1. <u>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u> 2. <u>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u> 3. <u>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u> ③ <u>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1. <u>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및 농업정책관</u> 2. <u>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u> 3. <u>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u>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 1. <u>농산물 또는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u> 2. <u>농산물 또는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u> 3. <u>학계, 연구계 등에서 농수산물 수급에 대한</u>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u>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u> <u>4.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u>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u> <u>1. 회의 일시 및 장소</u> <u>2. 출석위원</u> <u>3. 심의내용</u> <u>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⑥ 그 밖에 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u> <u>1. 회의 일시 및 장소</u> <u>2. 출석위원</u> <u>3. 심의내용</u> <u>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⑥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종 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 고
제5조의4(수급 조절 위원회 의 설치) ① 농수산물 수급조절 등 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 에 농산물수 급조절위원 회를, 해양수 산부에 수산 물수급조절 위원회를 각 각 둔다.	⇒	제5조의5(수급 관리 위원회 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 급 안정 등 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 에 농산물수 급관리위원 회를, 해양수 산부에 수산 물수급관리 위원회를 각 각 둔다.	제5조의4(수급 조절 위원회 의 설치) ① 농수산물 수급조절 등 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 에 농산물수 급조절위원 회를, 해양수 산부에 수산 물수급조절 위원회를 각 각 둔다.	제5조의4(수급 조절 위원회 의 설치) ① 농수산물 수급조절 등 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 에 농산물수 급조절위원 회를, 해양수 산부에 수산 물수급조절 위원회를 각 각 둔다.	- 윤준병 의원안 : 위원회 명칭 변경 - 여기구·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② 농산물수 급조절위원회 와 수산물수 급조절위원회 (이하 “수급 조절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농수산물 의 수급상 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 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 한 사항 3. 제10조제 2항에 따 른 유통조 절 명령에 관한 사항	⇒	② 농산물수 급관리위원회 와 수산물수 급관리위원회 (이하 “수급 관리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농수산물 의 수급상 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 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 한 사항 3. 제10조제 2항에 따 른 유통조 절 명령에 관한 사항	② 농산물수 급조절위원회 와 수산물수 급조절위원회 (이하 “수급 조절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농수산물 의 수급상 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 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 한 사항 3. 제10조제 2항에 따 른 유통조 절 명령에 관한 사항	② 농산물수 급조절위원회 와 수산물수 급조절위원회 (이하 “수급 조절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농수산물 의 수급상 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 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 한 사항 3. 제10조제 2항에 따 른 유통조 절 명령에 관한 사항	- 윤준병 의원안 : 위원회 명 칭 변경 및 법률상 심의 사항 추가 - 여기구·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종 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 고
4.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그밖에 이 법에서 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도록 규정한 사항과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수급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각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윤준병의원안 : 위원 구성 구체화, 부위원장 삭제 및 위원 정수 축소(15명) - 여기구·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농업정책관 2.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 윤준병의원안 : 당연직 위원 구체화 - 여기구·이원택의원안 : 신설 없음

종 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 고
<신 설>	⇒	⑤ 제3항에 따 른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 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 수산부 장관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산물 또는 수산물 수급 과 관련이 있 는 생산자단 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 하는 사람 2. 농산물 또는 수산물 수급 과 관련이 있 는 유통인단 체 및 소비자 단체 대표 또 는 대표가 추 천하는 사람 3. 학계, 연구 계 등에서 농 수산물 수급 에 대한 풍부 한 경험과 전 문성을 가진 사람 4. 그밖에 농림 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 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 윤준병 의원안 : 위촉직 위원 구체화 - 여기구· 이원택 의원안 : 신설 없음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④ <u>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u>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		④ <u>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u>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④ <u>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u>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 윤준병의원안 : 신설 없음 - 여기구·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윤준병의원안 : 신설 없음 - 여기구·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⑥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그 밖에 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윤준병의원안 : 위원회 명칭 변경 반영 - 여기구·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1)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조절위원회의 법적 근거 상향 규정은 위원회 기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추후 기능 추가 및 강화 시 법률 개정 절차 장기화를 통하여 시의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선제적·사전적 조치가 요구되는 수급정책의 특성상 수급조절위원회의 법률상 심의기구 변경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해양수산부

개정안 중 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수용함.

다만,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수급정책의 특성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 적시대응이 곤란하므로, 신설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아닌 협의·자문기구로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한다)은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심의·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행정수요 및 정책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령 이하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현재 운영중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동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검토의견

(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에 관한 위원회 현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위원회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음.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현황 】

연번	구분		내용
1	위원회 구성일		- 2013. 4. 30.
2	위원 (20명)	위원장	- 당연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 위촉직: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
		공무원인 위원 (5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유통소비정책관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민간위원 (15명)	- 생산자대표 등 15명 * 공공기관 1명, 농협 1명, 생산자단체 6명, 소비자·유통업체 대표 4명, 학계 3명
3	'24년 회의 개최 실적		- 본회의: 출석 4회(서면 1회)
4	예산		- 2024년: 52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2025. 5. 23.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안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는 위원회로,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함.⁹⁾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로 근거규정인 「농안법 시행규칙」 제8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설치된 규정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최근 2년간 총 8회(2023년 3회, 2024년 5
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세한 상정안건은 아래와 같음.

【 최근 2년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개최 현황 】

연도	연번	개최일자	방식	상정안건
2024년	1	3월 28일 (목)	대면	① (심의)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23.10월 개정) 최신화
				② (보고)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및 대책 추진현황(안)
	2	6월 25일 (화)	대면	① (심의) 건고추 위기단계 기준가격 최신화 (농산물 수급관리가이드라인 개정)
				② (보고) 마늘, 양파 수급 및 가격 안정 방안
	3	9월 26일 (목)	대면	① (심의)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안)
				② (보고)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 구축방향(안)
	4	12월 4일 (수)	서면	① (보고) 신선 무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안)
	5	12월 11일 (수)	대면	① (심의)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② (보고) 김장 채소류 수급대책 결과 보고
				③ (보고)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 방안(안)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연도	연번	개최일자	방식	상정안건
2023년	1	5월 11일 (목)	대면	① (심의) 제6기 수급조절위원회 민간 위원장 호선
				② (보고)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 및 대책 추진현황
				③ (보고)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안)
	2	6월 28일 (수)	대면	① (보고) 여름철 노지채소 수급관리 방안
				② (보고)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3	10월 26일 (목)	대면	① (심의) 농산물 수급관리가이드라인 개정(안)
				② (심의)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안)
				③ (보고)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2025. 2. 21.

최근 2년간 상정안건을 살펴보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로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거나, 농산물 수급관리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는 것으로 보임.

한편, 해양수산부에는 본래 수산물 수급관리를 포함하여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었음.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2023년 10월 31일(2024년 5월 1일 시행)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가 폐지되고, 해양수산부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능만을 수행하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가 새로 신설되었음.¹⁰⁾

【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와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비교 】

연번	구분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중전)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현행)
1	기능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위원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기관/단체 임직원 중 기관장/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수협중앙회 나. 수산물 유통협회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다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중 수산물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임직원 다. 수산물 유통관련단체 임직원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임기	3년	별도 임기 규정 없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작성, 2025. 5. 10.

1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4. 수산물 수급관리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는 ① 위원이 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고,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다는 점에서, ① 위원이 공무원은 물론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② 위원장을 호선하던 종전의 수산물유통발전심의회와 차이가 있음.

이는 위원회의 성격이 심의기구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기구로 변화됨에 따라, 민간위원을 둘 필요성이 낮아지는 한편,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회의 진행을 주도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2) 검토의견

첫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 법률상의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하여 설치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위원구성이나 심의기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7)”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해당 의안은 지난 2025년 3월 20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는데, 향후 법안심사에 있어서는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개정안은 ②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산물수급조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본래 해양수산부에는 수산물의 수급관리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해당 위원회는 2023년 10월 법률개정을 통하여 폐지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능’만을 수행하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¹¹⁾로 대체된 바 있음.

1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수산물의 수급관리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한 차례 폐지되었으나 다시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폐지된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대체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와, 개정안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사이에는 역할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세 건의 개정안은 규정하는 사항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위원 정수에 대하여 윤준병의원안은 15명 이내, 어기구의원안과 이원택의원안은 20명 이내를 각각 규정함.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20명 이내이고, 종전에 해양수산부에 설치되었으나 폐지된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20명 이내로 규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20명 이내로 규정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4. 수산물 수급관리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개정안 중 어기구의원안과 이원택의원안은 윤준병의원안과 달리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은 위원회에 대한 주요사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일정 부분을 법률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윤준병의원안 제5조의5제4항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농업계 인사인 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농업정책관, ②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③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으로만 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해양수산부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면, 당연직 위원 구성에 있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나 수협 등 수산업계 인사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윤준병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면서 생산자단체 대표를 5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

윤준병의원안은 위원회 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¹²⁾

1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295.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특정 위원을 일정 인원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¹³⁾가 있는데, 이는 정책당사자인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이를 고려하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거쳐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넷째, 어기구의원안과 이원택의원안은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의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함.

현재 개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 운영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해당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상정 안건 등이 포함되어야 함.¹⁴⁾

1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①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1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에 관한 어기구의원안 및 이원택의원안 제5조의4제4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공공기록물법」상의 회의록 작성 의무가 부여될 것이므로, 입법의 필요성은 낮아 보임.

참고로, 현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위원회이므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내부자료로서 주요 발언요지 수준을 정리하는 상황임.

한편, 어기구의원안과 이원택의원안은 제5조의4제5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¹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공기록물법」은 ①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¹⁶⁾ ② 회의록이 아닌 속기록과 녹음기록에 대하여만 최대 10년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¹⁷⁾

1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③ 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개정안이 회의록 공개 의무의 예외로서 예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됨.¹⁸⁾

그러므로, 개정안의 수급조절위원회가 생산하는 회의록 역시 별도로 공개 의무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공개 의무가 부여될 것이므로, 입법의 필요성은 낮아 보임.

다만, 「정보공개법」상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¹⁹⁾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보공개법」과 달리 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농안법」에서 별도로 공개의무를 규정할 수는 있어 보임.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예시가격 결정의 심의 의무화 등

개정안은 ① 안 제5조의5에 따른 수급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인 ‘예시가격 결정’에 대하여 심의를 의무화하고,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한가격 예시와 보호 시책 마련을 규정하며, ③ 예시가격 결정 시 농가의 경영상황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 여기구의원안 · 이원택의원안 제8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u>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u> [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u>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과 상한가격</u> [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u>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과 상한가격</u> [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u>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과 상한가격</u> [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항에 따라 예시가 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 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u>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u>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 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과 <u>협의하여야</u> 한다.	항에 따라 예시가 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 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u>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농가 경영상황</u>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 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과 <u>협의한 후 수급관리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에 따라 예시가 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 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u>생산량, 예상수급상황 및 농가경영상황</u>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 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과 <u>협의한 후 수급조절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에 따라 예시가 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 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u>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농가 경영상황</u>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 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과 <u>협의한 후 수급조절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1.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구매 및 처분 <u><신 설></u>	3. 제9조의2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구매 및 처분 <u>3의2. 제9조의3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u>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구매 및 처분 <u>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u>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구매 및 처분 <u>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u>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8조(가격 예시) ①·②(생략)	=	제8조(가격 예시) ①·②(생략)	제8조(가격 예시) ①·②(생략)	제8조(가격 예시) ①·②(생략)	- 종전 대안과 동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후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윤준병의원안 : 위원회 명칭 변경 반영 - 여기구·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고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생략)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 4. (생략) 5. (생략)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생략) 3. 제9조의2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3의2. 제9조의3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 4. (생략) 5.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생략)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 4. (생략) 5.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생략)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 4. (생략) 5. (생략)	- 윤준병 의원안 : 조 번호 변경 반영 - 어기구·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1)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 중 예시가격 결정 시 ‘농가경영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항은 ‘각 기관에서 조사되는 농어업관련 통계조사 결과’를 고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용할 수 있어 보임.

다만, 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한가격 예시는 「농안법」의 제정 취지인 농수산물 수급 및 유통의 효율화에 맞지 않고, ② 예시가격 결정 시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은 수급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함.

(2) 해양수산부

물가안정을 위한 상한가격 예시는 「농안법」의 입법 취지인 농수산물 수급 및 유통의 효율화에 맞지 않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시가격을 결정할 시 적시 대응이 어려워 각각 수용이 곤란함.

한편, 예시가격 결정 시 경영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농어가의 경영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부처 등에서 관리하는 주요 통계 등을 대신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어 보임.

(3) 공정거래위원회

농산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격에 대한 정부개입은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한가격까지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시가격 지지를 위한 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농산물의 가격이 수요·공급의 원리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하한가격과 상한가격 내에서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함.

2) 검토의견

(1) 예시가격 설정 현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약재배 채소류에 대하여 「농안법」 제8조에 따라 하한가격을 예시하는데, ① 무·배추·대파·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경우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의 평균치가 하한가격임.

② 고추·마늘·양파 등 저장성 품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계청 생산비 통계의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가 하한가격이나, 예외적으로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더 낮다면 이를 하한가격으로 함.

【 농산물 예시(하한)가격 결정 기준 】

연번	품목	결정 기준
1	무, 배추, 대파, 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	해당연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의 평균치
2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성 품목	해당연도 기준 통계청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의 평균치 (단,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더 낮은 경우 이를 적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9호,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과 통계청 생산비 통계에서 최근 5년간 경영비 및 직접생산비는 10a(=1,000m²)²⁰⁾ 면적에서의 생산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바, 5개년 평균치를 산출할 수 있음.

【 비저장성 품목: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中 경영비 】

(단위: 원)
(기준: 년 1기작/10a)

연번	연도	무		배추			대파	당근
		가을무	고랭지무	봄배추	가을배추	고랭지배추		
1	2019년	1,134,614	1,272,185	1,053,380	1,078,868	1,322,468	1,308,039	2,126,669
2	2020년	1,117,386	1,467,239	997,529	1,148,867	1,477,101	1,392,701	2,141,367
3	2021년	1,041,120	1,443,890	943,876	1,220,690	1,428,956	1,443,235	1,948,366
4	2022년	1,279,838	1,651,343	1,207,984	1,344,133	1,326,513	1,694,945	2,313,680
5	2023년	1,168,128	1,535,040	1,265,953	1,381,542	1,609,023	1,770,456	2,395,024
5개년 평균		1,148,217	1,473,939	1,093,744	1,234,820	1,432,812	1,521,875	2,185,021

주: 1a=100m², 10a=1,000m²

자료: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2019, 2020, 2021, 2022, 2023), 2020~2024.

【 저장성 품목: 최근 5년간 통계청 생산비 통계 中 직접생산비 】

(단위: 원)

연번	연도	10a당			10kg당		
		고추	마늘	양파	고추	마늘	양파
1	2020년	3,468,725	2,990,922	2,446,723	177,154	20,572	3,073
2	2021년	3,655,412	3,220,504	2,591,194	130,854	22,631	3,034
3	2022년	4,080,708	3,477,795	2,673,644	174,952	28,169	3,949
4	2023년	4,498,969	3,865,860	2,820,022	196,654	29,309	4,155
5	2024년	4,935,811	3,900,358	2,750,405	190,432	31,529	4,355
5개년 평균		4,127,925	3,491,088	2,656,398	174,009	26,442	3,71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산물생산비통계

20) 참고로 1ha=100a=약 3,000평이므로, 0.1ha=10a=약 300평에 해당함

해당 5개년 평균값이 각각 ① 비저장성 품목에 대한 하한가격과, ② 저장성 품목에 대한 하한가격(단,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보다 낮은 경우)이 됨.

예를 들어, 10a의 면적에서 생산된 가을무의 하한가격은 114만 8,217원이 되고, 10a의 면적에서 생산된 마늘의 하한가격은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보다 높지 않다면 349만 1,088원이 됨.

(2) 검토의견

첫째, 예시가격 결정은 현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서, 개정안에 따라 동 위원회를 법정 심의위원회로 전환한다면, 위원회의 기존 자문사항 또한 법정 심의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예시가격 결정의 심의사항 전환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법정 심의위원회 전환 여부에 따라 함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은 상한가격 예시와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에 대하여, 현행법상 규정이 생산자 보호 위주의 하한가격 예시 제도에 그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하한가격과 상한가격을 모두 예시할 수 있다면, 동 제도는 정책적으로 해당 농

수산물의 가격 범위를 설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시책을 통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가격을 관리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어 보임.

이 경우,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여지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강화될 것이므로,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개정안이 예시가격 결정 시 농가경영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된 예시가격이 농가의 생산비 부담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현재 설정된 예시가격 기준을 살펴보면, ① 비저장성 농산물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의 5개년 경영비 통계를 활용하고, ② 저장성 농산물은 통계청 생산비 통계의 5개년 직접생산비 통계를 활용함.

그런데, 경영비와 직접생산비는 생산자인 농가에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들 모두 농가경영상황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기준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예시가격 결정 시에 농가경영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예시가격 결정 시 ‘농가경영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동 제도는 ‘농수산물’의 예시가격 설정이므로 ‘어가(漁家)’를 포함한 ‘농가·어의 경영상황’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유통조절명령의 심의 의무화

개정안은 윤준병의원안 제5조의5 및 어기구의원안 제5조의4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사항인 ‘유통조절명령’에 대하여 심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 어기구의원안 · 이원택의원안 제10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정한 후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정한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정한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

현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 윤준병의원안 : 위원회 명칭 변경 반영 - 여기구·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중 전 대 안	⇒	윤준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 고
공정거래위원 회와 협의한 후 <u>수급조절위원 회의</u>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의 해당 농수산 물의 생산자등 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 (이하 “유통명 령”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와 협의한 후 <u>수급관리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 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 도록 하는 유통 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 회와 협의한 후 <u>수급조절위원 회의</u> 심의를 거 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의 해당 농수산 물의 생산자등 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 (이하 “유통명 령”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 회와 협의한 후 <u>수급조절위원 회의</u> 심의를 거 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의 해당 농수산 물의 생산자등 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 (이하 “유통명 령”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1)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선제적이고 사전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수급정책의 특성상,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함.

(2) 해양수산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수급정책의 특성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될 경우 적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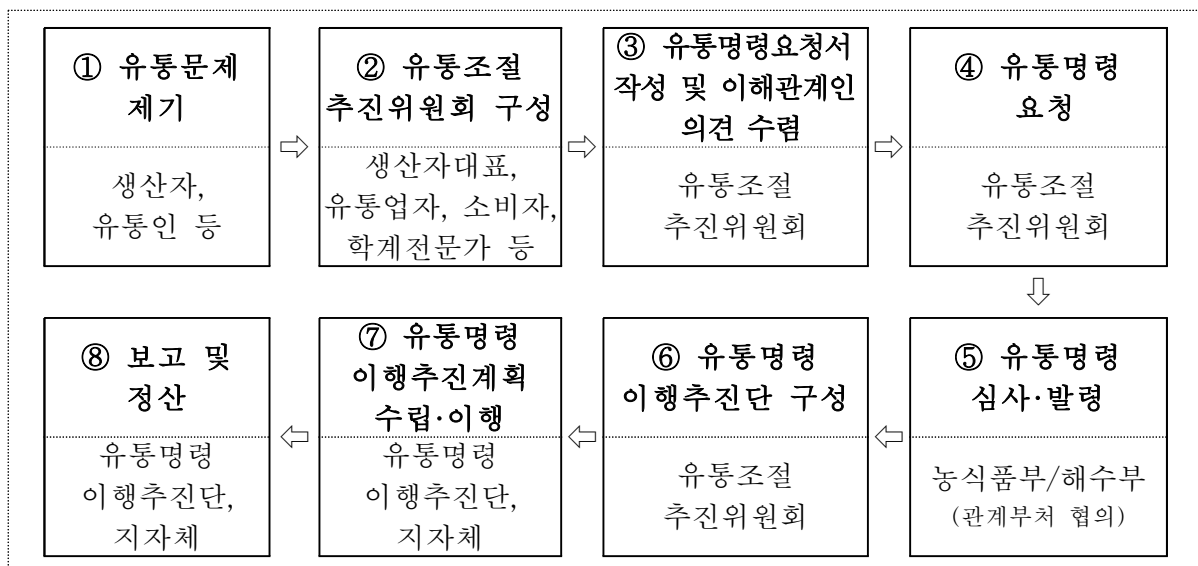
2) 검토의견

(1) 유통조절명령 제도 개요

현행법 제10조는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 중 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 제도를 규정함.

유통조절명령은 생산자, 유통인 등이 유통문제를 제기하면, 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유통조절명령 추진 절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2025. 2. 21.

현재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은 ① 감귤, ② 고랭지배추 및 ③ 겨울무에 대하여 지정된 상황임.

【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

연번	구분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감귤	- 해당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 해당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2	고랭지배추	- 해당 작형 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 해당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3	겨울무	- 해당 작형 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 해당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2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53호,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재가공)

감귤, 고랭지배추 및 겨울무 모두, ① 예상가격이 평균 가격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거나 ② 예상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유통조절명령을 통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

유통조절명령 발령 사례로는 고랭지배추와 감귤무의 경우는 없고, 감귤만이 다섯 차례('03, '04, '05, '07, '09) 있었음.

가령 지난 2007년 제주 지역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에서는 해당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4%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성이 낮은 감귤의 시장출하가 금지되었음.²¹⁾

21) 농림축산식품부, “2007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 2007. 10. 26.
<https://mafra.go.kr/home/524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NSUyRjQ4NDYxNS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2) 검토의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자문위원회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음.²²⁾

개정안은 동 위원회를 법정 심의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자문 사항인 유통조절명령을 심의사항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정 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존 자문사항 또한 법정 심의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유통조절명령의 심의사항 전환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법정 심의위원회 전환 여부에 따라 함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계약생산 지원 및 손실 보전 등

가.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단체등과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6조제3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송옥주의원안 제6조제2항, 제5항 및 제7항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6조(계약생산)	제6조(계약생산)	제6조(계약생산 등)	제6조(계약생산)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을 통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계약 생산 및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이하 “생산 자단체등”이 라 한다)와 협의하여 매 년 계약생산 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출하의 목표 및 시 행계획을 매 년 수립하여 야 한다.	자(이하 “생 산자단체등” 이라 한다) 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 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야 한다.	자(이하 “생 산자단체등” 이라 한다) 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 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야 한다.
<신 설>	④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④ (생 략)
	→ “나. 계약생산 지원 및 손실 보전”에서 검토			
<신 설>	⑤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⑤ (생 략)
	→ “나. 계약생산 지원 및 손실 보전”에서 검토			
<신 설>	⑥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⑤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 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⑥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 야 한다.
<신 설>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 에 따른 손 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4 항에 따른 지원제도 실 시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 에 따른 손 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 에 따른 손 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종 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고
제6조(계약 생산) ①(생략) ②(생략)	⇒	제6조(계약 생산) ①(생략) ②(생략)	제6조(계약 생산 등) ①(생략) ⑥(생략)	제6조(계약 생산) ①(생략) ②(생략)	제6조(계약 생산) ①(생략) ②(생략)	- 송옥주 의원안 : 조 제목 및 항 번호 변경
③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계 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 급과 적정 한 가격 유지를 위 하여 생산 자단체 및 농산물 생 산자(이하 “생산자단 체등”이라 한다)와 협의를하 여 매년 계 약생산의 목 표 및 시행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계 약생산을 통한 농산 물의 원활 한 공급과 적정한 가 격 유지를 위하여 생 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 하 “생산 자단체등” 이라 한다) 와 협의하 여 매년 계 약생산의 목 표 및 시행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주 요 농산물 의 원활한 수급과 적 정한 가격 유지를 위 하여 생산 자 관련 단체와 협 의를하여 계 약 생산 및 계약출 하의 목표 및 시행계 획을 매년 수립하여 야 한다.	③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계 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 급과 적정 한 가격 유지를 위 하여 생산 자단체 및 농산물 생 산자(이하 “생산자단 체등”이라 한다)와 협의를하 여 매년 계 약생산의 목 표 및 시행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계 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 급과 적정 한 가격 유지를 위 하여 생산 자단체 및 농산물 생 산자(이하 “생산자단 체등”이라 한다)와 협의를하 여 매년 계 약생산의 목 표 및 시행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 윤준병 의원안 : 주요 농산물 → 농산물 - 송옥주 의원안 :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 → 생산자 관련 단체 와 협의 - 어기구·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④(생략) ⑤(생략)	⇒	④(생략) ⑤(생략)	③(생략) ④(생략)	④(생략) ⑤(생략)	④(생략) ⑤(생략)	
⑥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 야 한다.	⇒	⑥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⑤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 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⑥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 야 한다.	- 윤준병· 어기구·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송옥주 의원안 : 보고 추가

종 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 고
⑦ 제3항에 따른 계획 의 수립 제 4항에 따른 손실의 보 전 및 제5 항에 따른 지원에 필 요한 사항 은 대통령 령으로 정 한다.	⇒	⑦ 제3항에 따른 계획 의 수립 제 4항에 따른 손실의 보 전 및 제5 항에 따른 지원에 필 요한 사항 은 대통령 령으로 정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 4항에 따른 지원 제도 실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계획 의 수립 제 4항에 따른 손실의 보 전 및 제5 항에 따른 지원에 필 요한 사항 은 대통령 령으로 정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계획 의 수립 제 4항에 따른 손실의 보 전 및 제5 항에 따른 지원에 필 요한 사항 은 대통령 령으로 정 한다.	- 윤준병 · 어기구 ·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송옥주 의원안 : 자구 수정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하여 계약재배 및 계약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계약생산의 목표·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는 개정안을 수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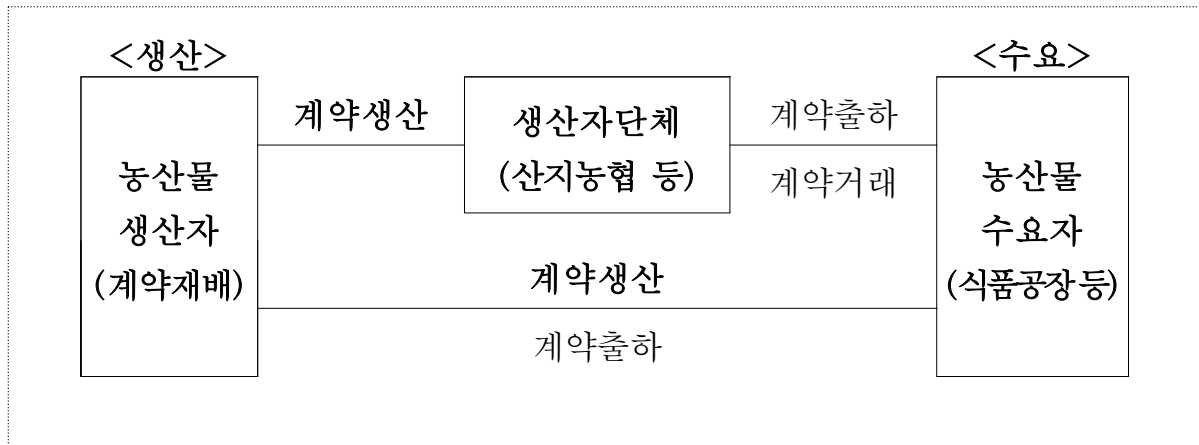
2) 검토의견

(1) 계약생산 개요

계약생산은 생산자가 사전적인 계약에 따라 농산물을 재배하고 그 수확물을 인도하는 생산방식임.

생산자는 ① 식품공장 등 실제 농산물 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산지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경우 생산자단체는 별도로 농산물 수요자와 계약거래를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므로, 산지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계약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게 됨.

【 계약생산의 형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4. 15.

계약생산은 농산물 생산자가 사전 계약을 통하여 미리 판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해진 물량을 생산하게 되므로, 농산물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실천계획으로서 계약생산 확대를 제시한 바 있음.²³⁾

23) 농림축산식품부,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23, p. 50.

(2)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와 협의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책적으로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계약생산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어 보이는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계약생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농산물 생산자와 생산자단체가 계약생산의 주요 행위자인 점을 고려하면,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이들과 협의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윤준병의원안은 제6조제3항에서 다른 개정안과 달리 “주요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주요”를 삭제하는 경우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의무의 이행가능성 측면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임.

또한, 현행법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므로, 내적 정합성 측면에서 이와 대응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개정안은 안 제6조제7항에서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데, 제3항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므로, 제7항에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계약생산 이행에 대한 지원 및 손실 보전

개정안은 계약생산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 또는 우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계약생산 시의 손실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6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 문대림의원안 제6조의2 신설 및 송옥주의원안 제6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 6 조 (계 약 생 산)	제 6 조 (계 약 생 산)	제 6 조 (계 약 생 산)	제 6 조 (계 약 생 산 등)	제 6 조 (계 약 생 산)	제 6 조 (계 약 생 산)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③ (생 략)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제6조의2(계약거래지원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으로 계약한 수량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	③ 정부는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및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 자체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현 행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신 설>		실의 일부를 보전(補填)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 대상 농산물은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품목으로 한정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관련 단체 및 생산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⑥ (생 략)
<신 설>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전의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제도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고
제6조(계약생 산 ①(현 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생략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계 약생산 또 는 계약출 하 과정에 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 체등의 손 실을 보전 할 수 있 다.	⇒	제6조(계약생 산 ①(현 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생략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계 약생산 또 는 계약출 하 과정에 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 체등의 손 실을 보전 할 수 있 다.	제6조(계약생 산(현행 과 같음) 제6조의2(계 약거래지 원제도) 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생산계약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한 생산 자단체가 부진한 작 황으로 계 약한 수량 의 농산물 을 출하할 수 없어 손실이 발 생하는 경 우에는 그 손실의 일 부를 보전 (補填)할 수 있다.	제6조(계약생 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⑥(현행 제 2항과 같음) ②(생략 ③ 정부는 계약생산 또는 계약 출하 과정 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하 는 생산자 관련 단체 및 생산자 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 자 체 가격 안정기금 조성을 지 원할 수 있다.	제6조(계약생 산 ①(현 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생략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계 약생산 또 는 계약출 하 과정에 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 체등의 손 실을 보전 할 수 있 다.	제6조(계약생 산 ①(현 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생략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계 약생산 또 는 계약출 하 과정에 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 체등의 손 실을 보전 할 수 있 다.	- 윤준병 : 여의원안 대안과 여의원안 : 종동일 - 문대림 : 손실을 보전 사항을 제6 조로 신설하 되, 사유를 ① 작황으로 한정 ②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 로 한정 - 송옥주 : 자체 안정기 금 조 성 사 항 추 가
<신설>	⇒		② 제항 에 따른 보 전 대상 농 산물은 제 6조의2제3 항에 따라 확정된 품 목으로 한 정한다	※ 관계 조문 문대림의원안 제16조의2(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도) ③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밀과 콩을 포함한 양곡, 채소, 과일 등 농산물적정가격제도가 필 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 고 이를 고시한다.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고
⑤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계 약생산 또 는 계약출 하를 성실 히 이행하 는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필 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	⑤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계 약생산 또 는 계약출 하를 성실 히 이행하 는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필 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계 약생산 또 는 계약출 하를 성실 히 이행하 는 생산 자 관련 단체 및 생산자를 우대 할 수 있다.	⑤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계 약생산 또 는 계약출 하를 성실 히 이행하 는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필 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계 약생산 또 는 계약출 하를 성실 히 이행하 는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필 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 윤준병 · 여기구 ·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 문대림 의원안 : 해당 없음 - 송옥주 의원안 : 지원→우대
⑥(생략)		⑥(생략)		⑤(생략)	⑥(생략)	⑥(생략)	
⑦ 제3항 에 따른 계획의 수 립, 제4항 에 따른 손실의 보 전 및 제5 항에 따른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 한다.	⇒	⑦ 제3항 에 따른 계획의 수 립, 제4항 에 따른 손실의 보 전 및 제5 항에 따른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 한다.	③ 제1항 에 따른 손실 보 전의 기 준 및 신 청 방법 등에 필 요한 사 항은 대 통령령으 로 정한 다.	⑦ 제2항 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4항 에 따른 지원제도 실시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 로 정한다.	⑦ 제3항 에 따른 계획의 수 립, 제4항 에 따른 손실의 보 전 및 제5 항에 따른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 한다.	⑦ 제3항 에 따른 계획의 수 립, 제4항 에 따른 손실의 보 전 및 제5 항에 따른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 한다.	- 윤준병 · 여기구 ·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 문대림 의원안 : 위임사항 구체화 (손실 보 상의 기 준 및 신청방법) - 송옥주 의원안 : 위임사항 손실보전 연사항 중 관 삭제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계약재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중 생산자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은 수용함.

다만, 개정안 중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사인(私人) 간의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손실 보전 시 생산자단체등의 수급안정 참여 유인이 없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므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발의된 이만희·김선교·박덕흠·정희용의원안과 같이 계약거래 활성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1)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현황

현행법 제6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3033-304)”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급안정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농협 등 생산자단체에게 계약재배 소요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지원함.

수급안정지원 사업은 2024년에 총 3,139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3,084억 700만원이 계획됨.

【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 수급안정지원 사업 개요 】

□ 산지유통종합자금 - 노지채소 수급안정지원

- 사업내용 : 노지채소 농가 계약재배 원물확보 자금, 제비용 등 융자(무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지역농협, 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감자, 양배추
- 계약물량 : ('19) 1,094천톤(23.5%) → ('21) 1,143천톤(26.0%) → ('22) 1,211천톤(25.0%)
- 예산 : ('23) 2,405억원 → ('24) 1,939억원 → ('25) 1,841억원

□ 산지유통종합자금 - 과채 수급안정지원

- 사업내용 : 과채류 농가 계약재배 물량 구매·판매 비용 융자(무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지역농협, 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오이, 호박, 풋고추, 가지, 토마토
- 계약물량 : ('19) 46.6천톤(3.7%) → ('21) 52.5천톤(4.2%) → ('22) 54.9천톤(4.4%)
- 예산 : ('23) 566억원 → ('24) 669억원 → ('25) 317억원

□ 산지유통종합자금 - 과수 수급안정지원

- 사업내용 : 과수 농가 계약재배 물량 구매·판매 비용 융자(무이자) 지원
- 시장가격의 급·등락으로 출하조절이 필요할 경우 출하조절 명령
- 지원대상 : 지역농협, 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사과, 배, 감귤, 단감
- 계약물량 : ('19) 117천톤(8.0%) → ('21) 113천톤(7.7%) → ('22) 109천톤(7.0%)
- 예산 : ('23) 628억원 → ('24) 631억원 → ('25) 926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4. 15.

【 최근 3년간 “수급안정지원” 사업 계획액 및 집행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409,320	409,320	409,278 [409,278]	-	42	341,031	341,031	340,027 [340,027]	-	1,004	343,156
수급안정 지원	359,924	359,924	359,924 [359,924]	-	-	313,932	313,932	313,932 [313,932]	-	-	308,40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5, p. 2,777.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2권, 2025, p. 131.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약생산에 대하여 지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으로서 계약생산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이 있음.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은 “농산물 생산유통조절지원(3031-326)”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노지채소 등의 수급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면적조절·출하정지 등의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차액을 보전하거나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해당 사업은 “계약생산”을 수행하는 농협과 “포전매매”를 수행하는 산지유통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농협 측 사업의 경우 지원자격으로서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 대상자일 것을 요구함.

해당 사업은 농안기금으로 운영되며, 2024년에는 201억 9,000만원의 계획현액 중 58억 8,000만원(① 배추 26억 1,000만원, ② 무 24억 1,000만원, ③ 마늘 8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43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됨에 따라 가격차 보전 등 가격 하락 시 수급안정 대책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사유를 제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207억 1,600만원을 계획액으로 반영하였음.

【 2025년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시행지침 주요내용 】

- 목적: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의 주산지 중심 사전·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 사업내용: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평년 가격의 80%)하는 제도
- 지원 내용

연번	구분	농협	산지유통법인
1	자격 요건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역농협·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참여 희망 품목(여름배추, 여름무, 겨울배추)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2	대상 품목	배추·무(全 작형), 고추, 마늘, 양파, 겨울대파, 고랭지감자	여름(고랭지)배추, 여름(고랭지)무, 겨울배추
3	지원 기준	국고 30%, 지자체 30%, 농협 20%, 자부담 20%	국고 50%, 자부담 50%

□ 지원자금

-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민간경상보조)
- (사용용도): 공급과잉 - 가격하락 시 보전기준가격과의 차액보전 또는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 등의 약정비용
- 공급부족 - 출하장려금(운송비, 작업비 등)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024. 12. (일부 재가공)

【 최근 3년간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계획액 및 집행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농산물생산 유통조절지원	55,635	55,635	22,061 [5,341]	-	33,574	20,590	20,590	6,090 [5,567]	-	14,500	21,116
채소가격 안정지원	55,190	55,190	22,061 [5,341]	-	33,129	20,190	20,190	5,880 [5,357]	-	14,310	20,7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5, p. 2,758.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2권, 2025, p. 120.

(2) 검토의견

산지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농산물 생산자와의 계약생산을 통하여 농산물을 확보하고, 이를 식품공장 등 농산물 수요자와의 계약출하를 통하여 출하함.

그런데 계약시점과 인도·출하시점이 다른 특성상, 작황부진이 발생 하는 경우 계약된 출하 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생산물량과는 별도로 구입하여 충당하게 될 수 있고, 시장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계약가격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됨.

이로 인하여 계약생산을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손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 불이행의 가능성도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① 작황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②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이나 우대를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계약생산의 안정적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중 성실한 이행에 대한 지원 또는 우대 조항의 경우, 유인 제공을 통하여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손실 보전의 경우 사인 간의 계약에서 나타나는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려는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법률체계에서 특정한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경우는, 대체로 보전하는 자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보전받는 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현행법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손실보전 역시 그러함.

【 유사 입법례: 손실보전 입법례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塲)하게 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塲) 등에 관한 사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11.

그런데 개정안은 국가의 원인행위에 따른 손실 보전이 아니라, 계약 생산을 장려하고 계약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등 정책적인 목적의 손실 보전에 해당함.

계약생산은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나, 계약생산의 원활한 정착을 통하여 농산물 수급조절이라는 공공성이 달성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

즉, 계약생산에 따른 손실이 국가의 원인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국가에게 일정한 보전의무 또는 당위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닐 것이나,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손실 보전을 장려 및 촉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손실 보전을 통한 계약생산 장려 및 촉진의 입법정책적 필요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한편, 문대림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① 제6조의2라는 별도의 조로 계약거래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② 대상품목을 농산물적정가격보장제도(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연동하여 한정하므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별도의 조 신설에 있어서는 현행법 제6조 역시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조를 신설할 필요성은 낮아 보임.

둘째, 대상품목을 농산물적정가격보장제도와 연동하는 것은, 두 제도 모두 수급안정과 적정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²⁴⁾에서 가능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계약생산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농산물과 적정가격(기준가격) 보장을 통한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두 제도를 연동함에 따라 유연한 정책대상 선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24) 문대림의원안 제16조의2(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되 생산 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적정가격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적정가격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차액의 한도는 해당 농산물 평년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다. 그 외 자구정리 사항

문대립의원안은 앞선 안 제6조의2제1항에서 ‘보전(補填)’의 한자 표기를 병기한바, 자구정리를 위하여 ‘보전’의 한자 표기를 병기하는 현행법 제12조제1항을 수정하려는 것임(문대립의원안 제12조제1항).

현행	문대립의원안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u>보전(補填)</u>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u>보전</u> 하게 할 수 있다.
※ 관계 조문 문대립의원안 제6조의2(계약거래지원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으로 계약한 수량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일부를 <u>보전(補填)</u>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대안	⇒	문대립의원안	비고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u>보전(補填)</u>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u>보전</u> 하게 할 수 있다.	- 종전 대안과 달리, 개정을 통하여 한자 표기 삭제

법제 실무상으로, 한글만으로 쓸 경우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에 대하여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하되,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곳에만 함께 기재하고 이후에는 함께 기재하지 아니함.²⁵⁾

따라서, 문대립의원안은 제6조의2제1항에서 먼저 보전에 대하여 한자를 함께 기재하게 되므로, 해당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는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한편, ‘문대립의원안 제6조의2제1항’은 계약생산의 손실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향후 심사과정에서 유사한 내용의 ‘윤준병의원안 · 어기구의원안 · 이원택의원안 제6조제4항 및 송옥주의원안 제6조제3항’과는 통합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윤준병의원안 · 어기구의원안 · 이원택의원안 제6조제4항과 송옥주의원안 제6조제3항은 “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문대립의원안 제6조의2제1항과는 달리 한자를 함께 기재하지 않음.

한자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 용어가 처음 나온 곳에서 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그 내용 중 “보전”을 “보전(補填)”으로 하고, 문대립의원안과 같이 현행법 제12조제1항의 “보전(補填)”을 “보전”으로 해야 할 것임.

25)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995.

6. 농산물수급안정대책 등

가.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윤준병의원안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생산자단체의 대표와 협의하여 매년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고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9조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제9조(농산물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구매 또는 판매 계획 3.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4.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와 협의하여 매년 제1항에 따른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 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중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비고
<신 설>	⇒	제9조(농산물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구매 또는 판매 계획 3.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4.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와 협의하여 매년 제1항에 따른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신설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윤준병의원안은 제5조에서 농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9조에서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두 제도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제5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제9조에서 계획을 이행하는 체계로 조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윤준병의원안이 아니라, 현재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선교·이만희·박덕흠·정희용의원안을 수용함.

2) 검토의견

윤준병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유사 입법례로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미곡(쌀)에 대하여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의무적으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야만 함.²⁶⁾

26)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즉,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양곡에 대하여 운영 중인 양곡수급안정대책 제도를, 양곡 외의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도 운영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안정대책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윤준병의원안은 쌀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을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단순히 매년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이에 따라 안 제5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음.

【 윤준병의원안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계획·대책 비교 】

연번	구분	안 제5조	안 제9조
1	명칭	- 농수산물수급계획	- 농산물수급안정대책
2	수립주기	- 매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매년 - 그 외: 재량적 수립
3	포함사항	- 농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 농산물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 가격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구매 또는 판매 계획
		- 농수산물의 적정한 자급목표	
		-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0.

개정안에 따른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은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수매 또는 판매 계획’을 제외하면 포함하는 사항의 문언 자체가 농산물수급계획과 거의 동일함.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수매 또는 판매 계획’은 유사 입법례인 「양곡관리법」과 비교하면 시장격리를 통하여 정책적인 가격안정 대응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농안법」의 경우 「양곡관리법」과 달리 비축제도 자체의 목적이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이므로, 시장격리의 결과는 결국 비축용 농산물의 물량 확대가 될 것이고, 이는 적정 재고량 관리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임.

이와 같이 내용과 주기가 거의 유사함에 따라, 농수산물 수급계획과는 별도로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차별화가 요구되는데, 이는 후술할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의 연관성임.

윤준병의원안은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초과생산량이 발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두 제도를 연계함.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선 농산물수급안정대책 시행을 통한 정책적인 수급관리의 기회를 부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생산량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제도 간 연계성에 따라 후술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한다면 농산물수급안정대책 또한 별도의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두 제도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의 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안 제9조제2항은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뿐, 별도의 기한을 설정하지는 않음.

따라서, 단서의 내용에 맞게 별도의 기한을 설정하거나,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기한 연장에 관한 단서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양곡관리법」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한 기한 연장 제도를 규정하는데, 이는 「양곡관리법」이 쌀(미곡)에 대한 양곡 수급안정대책을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기 때문임.²⁷⁾

둘째, 윤준병의원안은 동 대책과 연계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서 해당 제도의 의무시행 요건으로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초과생산량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함.

27)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①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수립되고, ②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²⁸⁾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운영 상의 차이가 있음.

【 농산물수급안정대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비교 】

연번	구분	농산물수급안정대책	농산물가격안정제도
1	대상 농산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그 외 농산물은 자율 수립)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된 농산물
2	세부사항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시장격리) 등	기준가격과의 차액 보전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9.

이 경우,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대통령령에서 농산물수급안정대책 의무수립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율적으로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의무시행 요건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즉,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의 수립·시행’을 의무시행의 전제조건으로 하지만, 농산물수급안정대책 수립 의무가 없는 품목이라면 해당 전제조건 자체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28) 윤준병의원안 외의 다른 개정안의 경우 별도 위원회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해당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의 의무 수립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이 아니라, ‘안 제9조의5²⁹⁾제3항에
따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한 농산물가격
안정제도 대상 품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9) 윤준병의원안 외의 다른 개정안의 경우 안 제16조의2에 해당함(농산물가격안정제도)

나.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개정안은 ① 현행법 제9조에 따른 농산물 수매의 대상을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서 ‘농산물’로 확대하려는 것임.

추가적으로 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은 ②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박수현의원안은 ③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9조의2, 송옥주·어기구·이원택·박수현의원안 제9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u>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	제9조의2(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제9조에 따른 농산물</u>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농산물의</u>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농산물의 과잉생산</u>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농산물의</u>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농산물의</u>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로 해당 농 산물을 수 매할 수 있 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 히 필요하 다고 인정 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 장에서 해 당 농산물 을 수매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 로부터 제5 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으 로 해당 농 산물을 수 매할 수 있 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 히 필요하 다고 인정 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 장에서 해 당 농산물 을 수매할 수 있다.	산물을 수 매할 수 있 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 히 필요하 다고 인정 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 장에서 해 당 농산물 을 수매할 수 있다.	매할 수 있 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 히 필요하 다고 인정 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 장에서 해 당 농산물 을 수매할 수 있다.	매할 수 있 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 히 필요하 다고 인정 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 장에서 해 당 농산물 을 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u>채소</u> <u>류 등의 수</u> <u>급 안정을</u> <u>위하여 생</u> <u>산·출하 안</u> <u>정 등 필요</u> <u>한 사업</u> <u>을 추진</u> <u>할 수</u> <u>있다.</u>	④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u>농산</u> <u>물의 수급</u> <u>안정을 위</u> <u>하여 생산</u> <u>·출하 안</u> <u>정 등 필요</u> <u>한 사업</u> <u>을 추진</u> <u>할 수</u> <u>있다.</u>	④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u>농산</u> <u>물의 수급</u> <u>안정을 위</u> <u>하여 생산</u> <u>·출하 안</u> <u>정 등 필요</u> <u>한 사업</u> <u>을 추진</u> <u>할 수</u> <u>있다.</u>	④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u>농산</u> <u>물의 수급</u> <u>안정을 위</u> <u>하여 생산</u> <u>·출하 안</u> <u>정 등 필요</u> <u>한 사업</u> <u>을 추진</u> <u>할 수</u> <u>있다.</u>	④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u>농산</u> <u>물의 수급</u> <u>안정을 위</u> <u>하여 생산</u> <u>·출하 안</u> <u>정 등 필요</u> <u>한 사업</u> <u>을 추진</u> <u>할 수</u> <u>있다.</u>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농림축 산 식품 부 장관은 농 산물의 선	⑤ 농림축 산 식품 부 장관은 농 산물의 선	⑤ 농림축 산 식품 부 장관은 농 산물 과잉

현 행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제적 수급 조절을 위 하여 농산 물의 재배 면적 관리 등의 노력 을 하여야 한다.	제적 수급 조절을 위 하여 농산 물의 재배 면적 관리 등의 노력 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재배면 적 관리시 농업인 소 득 감소 분 에 대한 보전 대책 을 마련하 여야 한다.	생산 시 생 산 자 보 호를 위한 계획을 매 년 수립하 여 국회 소관 상임 위 원 회 에 보 고 하 여 야 한다.
⑤ 제1항부 터 제3항까 지의 규정 에 따른 수 매 · 처 분 등에 필요 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 제 5항과 같음)	⑥ (현행 제 5항과 같음)	⑥ (현행 제 5항과 같음)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제9조(과잉 생산 시 의 생산 자 보호) 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 고	⇒	제9조의2 (과잉생 산 시의 생 산 자 보호)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제9 조에 따 른 농산 물 수급 안 정 대	제9조(과잉 생산 시 의 생산 자 보호) 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농산물의 과잉생산 가격안정 을 위하 여 필요	제9조(과잉 생산 시 의 생산 자 보호) 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 고	제9조(과잉 생산 시 의 생산 자 보호) 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 고	제9조(과잉 생산 시 의 생산 자 보호) ① (현행 과 같음)	- 윤준병 의원안 : 신설한 안 제9조의 농 산물수급안 정 대 책 과 연계 - 송옥주 의원안 : 과잉 생산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u>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u>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하 다 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인정할 때에 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인정할 때에 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에 따른 가격 안정 필요성 추가 - 여기구·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고
②(생략)	=	②(생략)	②(생략)	②(생략)	②(생략)	②(생략)	- 개정 없음
③(생략)	=	③(생략)	③(생략)	③(생략)	③(생략)	③(생략)	- 개정 없음
④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은 <u>농산물의</u> <u>수급 안정</u> <u>을 위하여</u> <u>생산·출</u> <u>하 안정</u> <u>등 필요한</u> <u>사업을 추</u> <u>진할 수</u> <u>있다.</u>	⇒	④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은 <u>농산물의</u> <u>수급 안정</u> <u>을 위하여</u> <u>생산·출</u> <u>하 안정</u> <u>등 필요한</u> <u>사업을 추</u> <u>진할 수</u> <u>있다.</u>	④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은 <u>농산물의</u> <u>수급 안정</u> <u>을 위하여</u> <u>생산·출</u> <u>하 안정</u> <u>등 필요한</u> <u>사업을 추</u> <u>진할 수</u> <u>있다.</u>	④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은 <u>농산물의</u> <u>수급 안정</u> <u>을 위하여</u> <u>생산·출</u> <u>하 안정</u> <u>등 필요한</u> <u>사업을 추</u> <u>진할 수</u> <u>있다.</u>	④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은 <u>농산물의</u> <u>수급 안정</u> <u>을 위하여</u> <u>생산·출</u> <u>하 안정</u> <u>등 필요한</u> <u>사업을 추</u> <u>진할 수</u> <u>있다.</u>	④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은 채소류 등 의 수급 안정을 위 하여 생산 ·출하 안 정 등 필 요한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 윤준병· 송옥주· 어기구·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박수현 의원안 : 개정 없음
⑤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은 <u>농산물의</u> <u>선 제 적</u> <u>수급조절</u> <u>을 위하</u> <u>여 농산</u> <u>물의 재</u> <u>배 면 적</u> <u>관리 등</u> <u>의 노력</u> <u>을 하여</u> <u>야 한다.</u>	⇒			⑤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은 <u>농산물의</u> <u>선 제 적</u> <u>수급조절</u> <u>을 위하</u> <u>여 농산</u> <u>물의 재</u> <u>배 면 적</u> <u>관리 등</u> <u>의 노력</u> <u>을 하여</u> <u>야 한다.</u>	⑤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은 <u>농산물의</u> <u>선 제 적</u> <u>수급조절</u> <u>을 위하</u> <u>여 농산</u> <u>물의 재</u> <u>배 면 적</u> <u>관리 등</u> <u>의 노력</u> <u>을 하여</u> <u>야 한다.</u> <u>다만 재</u> <u>배 면 적</u> <u>관 리 시</u> <u>농 업 인</u> <u>소득감소</u> <u>분에 대</u> <u>한 보전</u> <u>대 책 을</u> <u>마련하여</u> <u>야 한다.</u>	⑤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은 농 산 물 과잉생산 시 생산 자보호를 위한 계 획을 매 년 수립 하여 국 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 윤준병 의원안 : 삭제 후 신 설한 안 제9 조로 이동 - 송옥주 의원안 : 삭제 - 어기구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이원택 의원안 : 단서 신설 - 박수현 의원안 : 계획 수립 및 보고 의 무 규정으 로 변경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고
⑥ 제하 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수매· 처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하 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수매· 처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하 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수매· 처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하 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수매· 처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하 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수매· 처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하 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수매· 처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윤준병· 송옥주 의원안 : 항 번호 수정 - 어기구· 이원택· 박수현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법정 수매 대상 농산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제적 재배면적 관리 노력 의무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하고, 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한 개정안 역시 수용함.

한편, 현행법 및 개정안은 과잉생산 상황만을 전제로 한 생산자 보호로서, 이상기후로 인한 과소생산을 감안한 수급 불안시의 생산자 보호 조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검토의견

(1) 수매비축 제도 현황

현행법 제9조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매제도를 규정하는데, 해당 규정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과 연계되어 현재 수매비축 사업이 운영됨.

수매비축 사업은 계절적 수급과 가격변동이 큰 품목, 국민식생활에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 중에서 일정 물량을 수매·비축하여 가격 상승기에 방출함으로써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임.

해당 사업은 현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비축지원(3031-323)”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훈령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서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현재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수매비축 대상품목은 총 11개 농산물로, ① 고추, ② 마늘, ③ 양파, ④ 땅콩, ⑤ 두류, ⑥ 사과, ⑦ 배, ⑧ 배추, ⑨ 무, ⑩ 밀, ⑪ 감자임.

이 중에서 2024년·2025년 수매비축 품목은 ① 고추, ② 마늘, ③ 양파, ④ 두류, ⑤ 배추, ⑥ 무, ⑦ 밀, ⑧ 감자의 8개 농산물로, 2024년에는 총 89,497톤(2,482억 7,500만원)의 농산물을 수매하였음.

2025년에는 93,180톤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사업계획에서는 123,231톤을 비축하는 것을 계획함.

【수매비축 사업 2024년 집행 및 2025년 편성·계획 현황】

(단위: 톤, 백만원)

연번	품목	2024년 집행		2025년 예산		2025년 계획
		집행물량	집행금액	편성물량	편성금액	계획물량
1	두류	25,828	140,973	30,000	153,180	60,000
2	고추	784	15,584	1,650	20,468	1,650
3	마늘	2,978	13,408	2,600	11,683	2,600
4	양파	5,088	6,294	9,781	12,765	9,781
5	배추	19,991	27,921	11,997	12,774	12,000
6	무	15,546	15,641	6,152	5,280	6,200
7	밀	17,882	26,254	30,000	33,858	30,000
8	감자	1,400	2,200	1,000	1,688	1,000
합계		89,497	248,275	93,180	251,696	123,231

자료: ① 농림축산식품부,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2025.

②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6. 9. (일부 재가공)

이와 같은 수매비축 사업은 aT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수매한 농산물은 각지에 위치한 비축기지에 비축됨.

현재 비축기지는 정부 소유 8개소와 aT 소유 6개소의 총 14개소가 있음. 지역별로는 인천 1개소, 부산 3개소, 대구 1개소, 대전 1개소, 광주 1개소, 경기 3개소, 충북 2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가 위치함.

이 중에서 수매비축 품목을 보관하는 비축기지는 인천, 회덕, 노포 비축기지를 제외한 총 11개소임.

【 농산물 비축기지 운영현황 】

연번	비축기지		동수	보관 품목 수		재고량(톤)
				수매비축	수입비축	
1	정부소유 (8개소)	김포(경기)	3	2	4	3,241
2		평택(경기)	3	1	3	2,746
3		이천(경기)	4	3	6	8,620
4		인천(인천)	3	-	4	5,281
5		청원(충북)	4	3	3	4,116
6		장성(전남)	1	3	2	2,871
7		안심(대구)	2	4	4	3,328
8		부산(부산)	2	2	3	4,514
9	aT소유 (6개소)	청주(충북)	1	1	3	1,737
10		회덕(대전)	1	-	3	4,380
11		전주(전북)	1	1	3	2,792
12		광주(광주)	1	1	4	5,149
13		학장(부산)	1	2	2	3,906
14		노포(부산)	1	-	1	3,805
합계		14개소	28			56,48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급전략처, 2025. 5. 22.

【 농산물 비축기지 사진: 장성 비축기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6. 19.

(2) 검토의견

① 수매 대상 농산물 범위 확대

윤준병·송옥주·어기구·이원택의원안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수매제도의 대상을 현재의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서 ‘농산물’로 확대하려는 것임.

농산물 수매제도는 정부가 농산물을 수매하였다가 이를 판매 또는 처분하는 제도로, 이를 통하여 농산물의 수요 및 공급을 조절하여 시장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경우 특히 수매제도가 요구되는데, 이는 재고 보관의 어려움에 따라 공급 비탄력성이 나타나게 되므로, 시장 내부에서 자율적인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인하여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 역시도 가격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어, 수매와 같은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매 대상 농산물의 제한을 삭제하여 대상 범위를 전체 농산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노력 의무 부여

여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배면적 관리 등을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이원택의원안은 재배면적 관리 시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함.

농산물은 재배부터 수확까지의 생산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시장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여기구의원안과 이원택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배면적 관리 등을 통한 선제적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생산과정의 시작단계에 해당하는 재배단계의 면적을 관리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한편,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재배면적을 감축하려는 경우, 기존에 해당 농산물을 재배하던 농가는 ① 휴경하거나, ②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해당 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이원택의원안은 재배면적 관리 시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우려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참고로, 윤준병의원이 2025년 3월 27일에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3)”에서도 양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³⁰⁾에서 소득감소분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함.

이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8만ha 목표의 벼 재배면적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 생산 농가의 소득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³¹⁾ 이원택의원안과 유사한 취지로 보여 참고할 수 있어 보임.

③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박수현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위한 수매제도를 비축제도와 연계하여 수매비축 사업을 운영하는데, 매년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박수현의원안의 경우 다른 개정안과 달리 현행법 제9조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의무와 국회 보고 의무만을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박수현의

30) 「양곡관리법」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31) 농민신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지속성·수익성’이 관건”, 2025. 2. 14., 2025. 6. 11. 확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212500741>

원안만을 따르는 경우 해당 비축계획이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계획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보임.

한편, 정부의 국회에 대한 보고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 등 헌법상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으로,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함.³²⁾

이 중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또는 보고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정부의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정책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전문성을 통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박수현의원안은 과잉생산 시 농산물 수매에 대하여 규정하는 현행법 제9조에 생산자 보호 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의무만을 추가하려는 것임.

따라서, 다른 개정안의 재배면적 관리 노력 의무를 수용하는 경우, 수립해야 할 생산자 보호 계획에는 비축계획 외에 재배면적 관리 노력에 관한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임.

3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720.

다.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폭등)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비자 보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송옥주의원안 제9조의3 신설, 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9조의2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신 설>	제9조의3(가격 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제9조의5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의3(가격 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폭등으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의2(가격 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폭등으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의2(가격 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폭등으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관계 조문 윤준병의원안 제9조의5(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1.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 2.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				

현 행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1. <u>수매한 농 산 물 의 판매</u> 2. <u>생산자단체등,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 산 물 의 판매 지원</u> 3. <u>그밖에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소비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 다 고 인정 하 는 시책</u>	1. <u>정부 관 리 농 산 물 의 판매</u> 2. <u>생산자 관련 단체,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 산 물 의 판매 지원</u> 3. <u>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제공</u> 4. <u>그 외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필요 하 다 고 인정 하 는 시책</u>	1. <u>수매한 농 산 물 의 판매</u> 2. <u>생산자단체등,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 산 물 의 판매 지원</u> 3. <u>취약계층을 위한 농 산 물 이용 권 지급</u> 4. <u>그 밖에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소비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 다 고 인정 하 는 시책</u>	1. <u>수매한 농 산 물 의 판매</u> 2. <u>생산자단체등,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 산 물 의 판매 지원</u> 3. <u>취약계층을 위한 농 산 물 이용 권 지급</u> 4. <u>그 밖에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소비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 다 고 인정 하 는 시책</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 여 야 한다.</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 하 다 고 인정한 시책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 여 야 한다.</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 여 야 한다.</u>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고
제9조의2(가 격폭등 시 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농산 물의 가격 폭등으로 가격안정 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다 음 각 호 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의3(가 격폭등 시 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제9 조에 따른 농산물수 급안정대 책을 수립 · 시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제 9조의5제3 항제2호에 따라 확정 · 고시된 농산물 기 준가격의 100분의 1 0 이상 상 승하거나 상승이 우 려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시책 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의3(가 격폭등 시 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농산 물의 가격 폭등으로 가격안정 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다 음 각 호 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의2(가 격폭등 시 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농산 물의 가격 폭등으로 가격안정 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다 음 각 호 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의2(가 격폭등 시 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농산 물의 가격 폭등으로 가격안정 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다 음 각 호 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윤준병 의원안 : ① 시책 추 진 조건인 가격폭등을 구체화, ② 시책 중 농산물 이용 권 지급 삭제 - 송옥주 의원안 : 일부 자구 수정 - 여기구· 이원택 의원안 : 중전 대안 과 동일
1. 수매 한 농 산물의 판매		1. 수매 한 농 산물의 판매	1. 정부 관리 농산물 의 판매	1. 수매 한 농 산물의 판매	1. 수매 한 농 산물의 판매	
2. 생산자 단체 등, 저장업 자, 도매		2. 생산자 단체 등, 저장업 자, 도매	2. 생산자 관련 단 체, 저장 업자, 도	2. 생산자 단체 등, 저장업 자, 도매	2. 생산자 단체 등, 저장업 자, 도매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고
업자· 소매업 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 의 판매 지원		업자· 소매업 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 의 판매 지원	매업자 · 소매 업자 등 이 보유 한 농산 물의 판 매 지원	업자· 소매업 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 의 판매 지원	업자· 소매업 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 의 판매 지원	
3. 취약계 층을 위 한 농산 물 이용 권 지급			3. 취약계 층을 위 한 바우 처 제공	3. 취약계 층을 위 한 농산 물 이용 권 지급	3. 취약계 층을 위 한 농산 물 이용 권 지급	
4. 그 밖 에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 정하는 시책		3. 그밖에 농림축 산식품 부장관 이 소비 자 보호 를 위하 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 는 시책	4. 그 외 농림축 산식품 부장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정 하는 시 책	4. 그 밖 에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 정하는 시책	4. 그 밖 에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 정하는 시책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1항에 따 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 원을 마련 하기 위하 여 노력하 여야 한다.	⇒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1항에 따 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 원을 마련 하기 위하 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1항에 따 른 필요하 다 고 인정 한 시책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 물 가격안 정기금으 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1항에 따 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 원을 마련 하기 위하 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1항에 따 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 원을 마련 하기 위하 여 노력하 여야 한다.	- 윤준병· 여기구·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송옥주 의원안 : 재원 마련 노력 의무 대신 농안 기금 지원 규정 마련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소비자가격은 개별 유통주체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 지원 시 시장 내에서 자율 조정기능이 없어지게 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함.

또한, 소비자 지원 시책을 법제화하게 되면 농안기금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어 농안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보임.

2) 검토의견

개정안은 가격 폭등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³³⁾ 과잉생산(가격하락) 시의 생산자 보호에 대하여는 규정하지만 가격 폭등 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가격 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현행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목적 실현의 수단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규정하므로, 해당 시책들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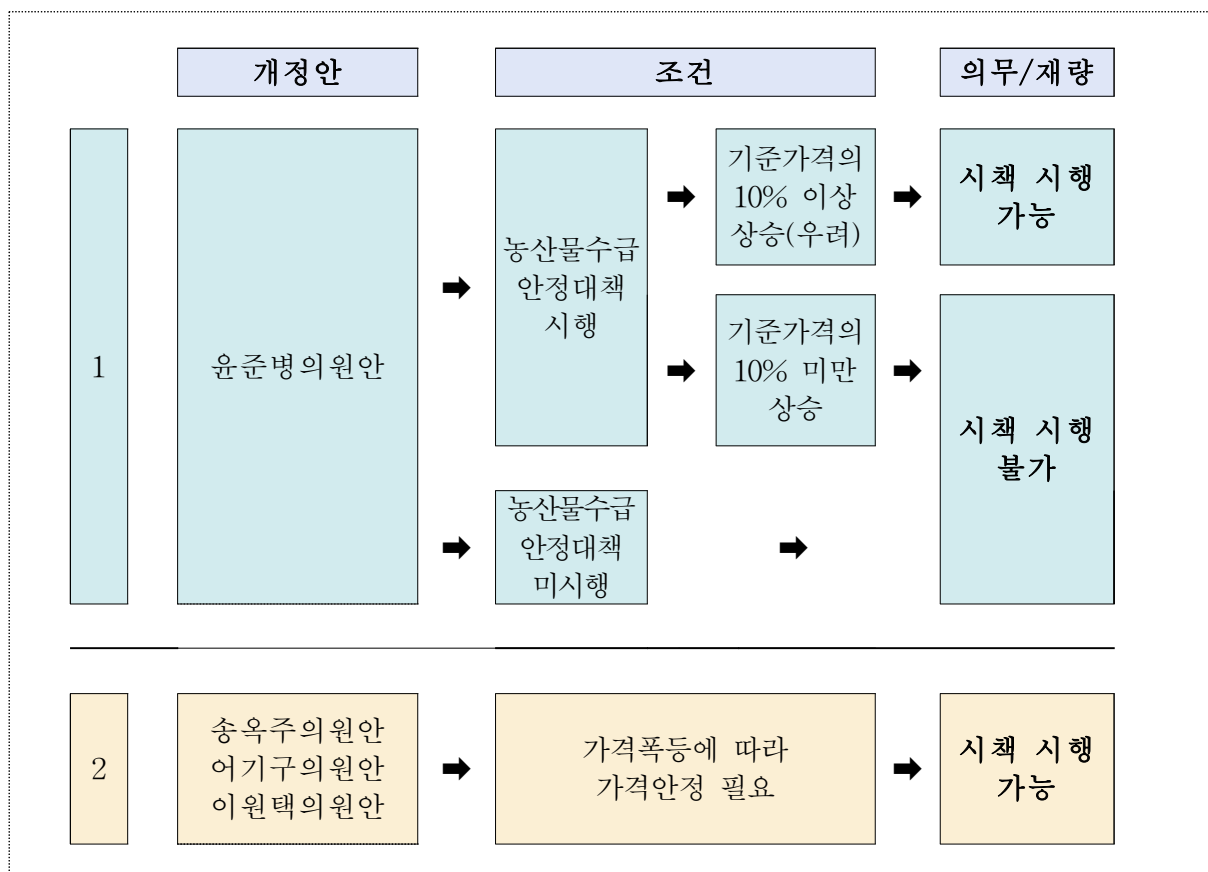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또는 ‘적정 가격 유지’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마다 달리 정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각각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윤준병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동 제도를 ① 안 제9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안정대책 및 ② 안 제9조의5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제도와 연계하는 차이가 있음.

【 개정안별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작동 방식 】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1.

윤준병의원안은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제도적 완결성을 높이는 한편, 시책 시행 기준이 ‘기준가격의 10% 이상 상승 여부’로서 명확한 것으로 보임.

다만, 윤준병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만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의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대상 품목에 대하여만 기준가격을 설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윤준병의원안과 같은 연계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이 수립되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동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또한, 송옥주의원안·여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과 달리 명확한 제도 시행 기준이 있음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시책 시행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연계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연계되는 제도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송옥주의원안·여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과 같이 하는 경우, 자구 중 “농산물의 가격폭등으로 가격안정을 위하여”는 접속사의 사용이 일부 어색한 부분이 있음.

따라서, 조 제목인 “가격 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를 고려하여, “농산물의 가격 폭등 시 가격안정을 위하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송옥주의원안은 ‘정부관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의 취지와 현행법 제도를 고려하면 이는 다른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수매한 농산물’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농안법」에서는 별도로 ‘정부관리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바가 없으므로, 다른 개정안처럼 ‘수매한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양곡관리법」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양곡관리법」 제2조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임.³⁴⁾

셋째, 윤준병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제1항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으로서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이용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3041-385)”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함.

동 사업은 「농업식품기본법」 제23조의²³⁵⁾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업임.

34) 「양곡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3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식품바우처 사업 개요 】

- (지원내용)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농식품 바우처)을 월 단위로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농식품 바우처를 차등 지원하며 식생활 교육을 병행하여 식품 활용성과 구매율 제고
 - 시범사업('20~'24) → 본사업('25~)
- ('25년 예산) 총사업비 773억원(국비 381, 지방비 392)
 - 국비보조율 서울 30%, 기타지역 50% (단, 전담기관 사업운영비 100%)
- (지원대상) 생계급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전국)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공급
- (월 지원금액)

(단위: 가구, 천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지원금액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2025, p. 2247. (일부 재가공)

사업의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³⁶⁾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을 포함하는 가구’로, 이들에게 매달 지원금액에 따른 이용권을 지급함.

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3,171,856원)

개정안을 통하여 농산물 가격의 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농산물 이용권(바우처)을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면, 현재 운영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연계하여 가격 폭등 시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보임.

다만,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목적 실현의 수단으로 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권 지급의 경우 이를 통한 수요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순수한 소비자 보호 측면이 보다 중시되는 정책인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가격 폭등 시’에만 농산물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현재 운영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매달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대신, 우리 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25년 4월 29일에 수정가결한,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8)”에서 농식품이용권 지급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송옥주의원안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는 다른 개정안과 달리, 농안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가격 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재원 관련 개정안별 비교 】

연번	구분	개정안별 규정		농안기금 지출 규정 여부
		안 제9조의2/제9조의3 (가격 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안 제57조 (기금의 용도)	
1	윤준병 의원안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	-	미규정
2	송옥주 의원안	농안기금으로 지원 가능	농안기금 지출 용도에 포함	규정
3	어기구 의원안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	농안기금 지출 용도에 포함	규정
4	이원택 의원안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	농안기금 지출 용도에 포함	규정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2.

참고로 다른 개정안의 경우, ① 어기구의원안과 이원택의원안은 농안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 안 제57조에서 동 제도를 지출 용도로 명시하여 규정하므로, 송옥주의원안과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임.

동 제도에 대하여 농안기금으로 지출할 것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송옥주의원안처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반면, ② 윤준병의원안은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의무 외에는 재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농안기금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송옥주의원안과 차이가 있음.

따라서, 농안기금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는 안 제57조의 내용과 연계하여, 동 제도의 시책들을 농안기금으로 지출하도록 할 것이라면 송옥주의원안, 농안기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단순히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의무만을 부과할 것이라면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할 수 있어 보임.³⁷⁾

37) 농안기금 지출 여부의 타당성 여부는 안 제57조의 검토의견에서 다루도록 함

라. 그 외 자구정리 사항

개정안은 ① 현행법 제9조의2의 조 번호를 제9조의3 또는 제9조의4로 변경하고, ② 현행법 제9조 및 제9조의2의 조 번호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다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9조의4 및 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9조의3, 윤준병의원안 제14조 및 제59조, 윤준병의원안·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55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제9조의4(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 대금은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 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 제2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 호 등 사업의 손 실처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u>제9조에</u> 따른 수 매와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 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 · 수출 · 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 로 인한 원가 손 실 및 수송 · 포 장 · 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 으로 처리한다.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 호 등 사업의 손 실처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u>제9조의2에</u> 따른 수매와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 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 · 수출 · 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 로 인한 원가 손 실 및 수송 · 포 장 · 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 으로 처리한다.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 호 등 사업의 손 실처리) (현행과 같음)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 호 등 사업의 손 실처리) (현행과 같음)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u>제9조의2</u> 제3 항, 제16조제2 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 에 따라 납입 되는 금액	3. <u>제9조의4</u> 제3 항, 제16조제2 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 에 따라 납입 되는 금액	3. <u>제9조의3</u> 제3 항, 제16조제2 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 에 따라 납입 되는 금액	3. <u>제9조의3</u> 제3 항, 제16조제2 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 에 따라 납입 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1.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9조의3 (물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 ③ (생략)	⇒	제9조의4 (물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 ③ (생략)	제9조의3 (물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 ③ (생략)	제9조의3 (물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 ③ (생략)	- 윤준병의원안 : 조 번호 수정 - 여기구·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물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 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물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의2제3항 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물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물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윤준병의원안 : 인용 조 번호 수정 - 여기구·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⑤ (생략)		⑤ (생략)	⑤ (생략)	⑤ (생략)	- 개정 없음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고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 의 손실처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제9 조에 따른 수 매와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 의 시행에 따 라 생기는 감 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 수출·기증과 그 밖의 처분 으로 인한 원 가 손실 및 수 송·포장·방 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 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 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 의 손실처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제9 조의2에 따른 수매와 제13조 에 따른 비축 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 격 하락, 판매 ·수출·기증 과 그 밖의 처 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포장·방 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 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 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 의 손실처리) (현행과 같음)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 의 손실처리) (현행과 같음)	- 윤준병 의원안 : 인용 조 번 호 수정 - 여기구· 이원택 의원안 : 개정 없음
제55조(기금의 구성) ① 기 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2 (생략) 3. 제9조의3제 3항, 제6조 제2항 및 다 른 법률의 규 정에 따라 납 입되는 금액 4. (생략) ② (생략)	⇒	제55조(기금의 구성) ① 기 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2 (생략) 3. 제9조의4제 3항, 제6조 제2항 및 다 른 법률의 규 정에 따라 납 입되는 금액 4. (생략) ② (생략)	제55조(기금의 구성) ① 기 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2 (생략) 3. 제9조의3제 3항, 제16조제 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 에 따라 납 입되는 금액 4. (생략) ② (생략)	제55조(기금의 구성) ① 기 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2 (생략) 3. 제9조의3제 3항, 제16조제 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 에 따라 납 입되는 금액 4. (생략) ② (생략)	- 윤준병 의원안 : 인용 조 번 호 수정 - 여기구· 이원택 의원안 : 개정 없음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고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비용이 생 기면 이를 기 금에서 손비 (損費)로 처리 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3 조 및 「종 자산업법」 제22조에 따 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생략)	⇒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비용이 생 기면 이를 기 금에서 손비 (損費)로 처리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 법」 제22조 에 따른 사 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생략)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현행과 같음)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현행과 같음)	- 윤준병 의원안 : 인용 조 번 호 수정 - 여기구· 이원택 의원안 : 개정 없음

윤준병의원안은 안 제9조와 제9조의3을 신설하고 현행법 제9조의 조 번호를 제9조의2로 변경함에 따라, ① 현행법 제9조의2의 조 번호를 제9조의4로 변경하고, ② 현행법 제9조 및 제9조의2를 인용하는 현행법 제14조, 제55조 및 제59조의 조문을 정비함.

여기구의원안 및 이원택의원안은 안 제9조의2를 신설함에 따라, ① 현행법 제9조의2의 조 번호를 제9조의3으로 변경하고, ② 현행법 제9조의2를 인용하는 현행법 제55조의 조문을 정비함.

신설 조항에 따른 조 번호 중복 문제의 해소와 조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각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7.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등

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개정안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9조의5 신설, 문대림의원안·송옥주의원안·여기구의원안·문금주의원안·이원택의원안·박수현의원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로 제도의 명칭을 ①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및 이원택의원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로, ② 문대림의원안은 “농산물적정가격보장제도”로, ③ 박수현의원안은 “농산물가격보장제도”로 함. 이하에서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로 지칭함.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신 설>	제9조의5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농 산 물 의 가 격 불 안 정 에 따른 농 가 경영 위 험 을 완 화 하고 수 급 을 안 정 시 켜	제16조의2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제도) ①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은 농 산 물 의 가 격 불 안 정 에 따른 농 가 경영 위 험 을 완 화 하고 수 급 을 안 정 시 켜	제16조의2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농 산 물 의 가 격 불 안 정 에 따른 농 가 경영 위 험 을 완 화 하고 수 급 을 안 정 시 켜	제16조의2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농 산 물 의 가 격 불 안 정 에 따른 농 가 경영 위 험 을 완 화 하고 수 급 을 안 정 시 켜	제16조의2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농 산 물 의 가 격 불 안 정 에 따른 농 가 경영 위 험 을 완 화 하고 수 급 을 안 정 시 켜	제16조의2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농 산 물 의 가 격 불 안 정 에 따른 농 가 경영 위 험 을 완 화 하고 수 급 을 안 정 시 켜	제16조의2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농 산 물 의 가 격 불 안 정 에 따른 농 가 경영 위 험 을 완 화 하고 수 급 을 안 정 시 켜

현 행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u>소비자를</u> <u>보 호 하</u> <u>며, 식량</u> <u>안 보 를</u> <u>강화하기</u> <u>위 하 여</u> <u>제3항에</u> <u>따라 확</u> <u>정·고시</u> <u>된 농산</u> <u>물의 시</u> <u>장가격이</u> <u>기준가격</u> <u>[평균 가</u> <u>격(직전 5</u> <u>년 중 최</u> <u>저가격과</u> <u>과 최고</u> <u>가 격 을</u> <u>제 외 한</u> <u>평균가격</u> <u>을 말한</u> <u>다)을 기</u> <u>준 으 로</u> <u>하되 생</u> <u>산 비 용</u> <u>및 수급</u> <u>상황 등</u> <u>을 고려</u> <u>하고 예</u> <u>산의 범</u> <u>위 에 서</u> <u>대통령령</u> <u>으로 정</u> <u>하는 바</u> <u>에 따라</u> <u>산 정 한</u>	<u>소비자를</u> <u>보호하며,</u> <u>식량안보</u> <u>를 강화</u> <u>하기 위</u> <u>하여 제3</u> <u>항에 따</u> <u>라 확정</u> <u>·고시된</u> <u>농산물의</u> <u>시장가격</u> <u>이 기준</u> <u>가격[평</u> <u>년 가격</u> <u>(직전 5</u> <u>년 중 최</u> <u>저가격과</u> <u>최고가격</u> <u>을 제외</u> <u>한 평균</u> <u>가 격 을</u> <u>말 한다.</u> <u>이하 같</u> <u>다)을 기</u> <u>초로 하</u> <u>되 생산</u> <u>비용 및</u> <u>수급 및</u> <u>물가상승</u> <u>률 등을</u> <u>고려하고</u> <u>대통령령</u> <u>으로 정</u> <u>하는 바</u> <u>에 따라</u> <u>산 정 한</u> <u>가격으로</u> <u>서 농림</u>	<u>소비자를</u> <u>보호하며,</u> <u>식량안보</u> <u>를 강화</u> <u>하기 위</u> <u>하여 제3</u> <u>항에 따</u> <u>라 확정</u> <u>·고시된</u> <u>농산물의</u> <u>시장가격</u> <u>이 기준</u> <u>가격[평</u> <u>년 가격</u> <u>(직전 5</u> <u>년 중 최</u> <u>저가격과</u> <u>최고가격</u> <u>을 제외</u> <u>한 평균</u> <u>가 격 을</u> <u>말 한다)</u> <u>을 기준</u> <u>으로 하</u> <u>되 생산</u> <u>비용 및</u> <u>수급 상</u> <u>황 등을</u> <u>고려하여</u> <u>대통령령</u> <u>으로 정</u> <u>하는 바</u> <u>에 따라</u> <u>산 정 한</u> <u>가격으로</u> <u>서 농림</u> <u>축산식품</u>	<u>소비자를</u> <u>보호하며,</u> <u>식량안보</u> <u>를 강화</u> <u>하기 위</u> <u>하여 제3</u> <u>항에 따</u> <u>라 확정</u> <u>·고시된</u> <u>농산물의</u> <u>시장가격</u> <u>이 기준</u> <u>가격[평</u> <u>년 가격</u> <u>(직전 5</u> <u>년 중 최</u> <u>저가격과</u> <u>최고가격</u> <u>을 제외</u> <u>한 평균</u> <u>가 격 을</u> <u>말 한다)</u> <u>을 기준</u> <u>으로 하</u> <u>되 생산</u> <u>비용 및</u> <u>수급 상</u> <u>황 등을</u> <u>고려하고</u> <u>예 산 의</u> <u>범위에서</u> <u>대통령령</u> <u>으로 정</u> <u>하는 바</u> <u>에 따라</u> <u>산 정 한</u> <u>가격으로</u>	<u>소비자를</u> <u>보호하며,</u> <u>식량안보</u> <u>를 강화</u> <u>하기 위</u> <u>하여 농</u> <u>산 물 의</u> <u>시장가격</u> <u>이 제3항</u> <u>에 따라</u> <u>확정·고</u> <u>시된 기</u> <u>준 가 격</u> <u>[평균 가</u> <u>격(직전 5</u> <u>년 중 최</u> <u>저가격과</u> <u>최고가격</u> <u>을 제외</u> <u>한 평균</u> <u>가 격 을</u> <u>말 한다)</u> <u>을 기준</u> <u>으로 하</u> <u>되 생산</u> <u>비용 및</u> <u>수급 상</u> <u>황 등을</u> <u>고려하고</u> <u>예 산 의</u> <u>범위에서</u> <u>대통령령</u> <u>으로 정</u> <u>하는 바</u> <u>에 따라</u> <u>산 정 한</u> <u>가격으로</u>	<u>소비자를</u> <u>보호하며,</u> <u>식량안보</u> <u>를 강화</u> <u>하기 위</u> <u>하여 제3</u> <u>항에 따</u> <u>라 확정</u> <u>·고시된</u> <u>농산물의</u> <u>시장가격</u> <u>이 기준</u> <u>가격[평</u> <u>년 가격</u> <u>(직전 5</u> <u>년 중 최</u> <u>저가격과</u> <u>최고가격</u> <u>을 제외</u> <u>한 평균</u> <u>가 격 을</u> <u>말 한다)</u> <u>을 기준</u> <u>으로 하</u> <u>되 생산</u> <u>비용 및</u> <u>수급 상</u> <u>황 등을</u> <u>고려하고</u> <u>예 산 의</u> <u>범위에서</u> <u>대통령령</u> <u>으로 정</u> <u>하는 바</u> <u>에 따라</u> <u>산 정 한</u> <u>가격으로</u>	<u>소비자를</u> <u>보호하며,</u> <u>식량안보</u> <u>를 강화</u> <u>하기 위</u> <u>하여 농</u> <u>산 물 의</u> <u>시장가격</u> <u>이 제3항</u> <u>에 따라</u> <u>확정·고</u> <u>시된 기</u> <u>준 가 격</u> <u>[평균 가</u> <u>격(직전 5</u> <u>년 중 최</u> <u>저가격과</u> <u>최고가격</u> <u>을 제외</u> <u>한 평균</u> <u>가 격 을</u> <u>말 한다)</u> <u>을 기준</u> <u>으로 하</u> <u>되 생산</u> <u>비용 및</u> <u>수급 상</u> <u>황 등을</u> <u>고려하고</u> <u>예 산 의</u> <u>범위에서</u> <u>대통령령</u> <u>으로 정</u> <u>하는 바</u> <u>에 따라</u> <u>산 정 한</u> <u>가격으로</u>

현 행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가격으로 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농산물수 급관리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쳐 고 시한 가 격을 말 한다. 이 하 같대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 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 급 하는 제도(이하 “농산 물가격안 정제도” 라 한다) 를 실시 할 수 있 다. 다만 제9조에 따른 농 산물수급 안정대책 을 수립 ·시행하 였음에도	축산식품 부장관이 제16조의 3에 따른 농산물적 정가격심 의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고 시 한 가 격 을 말 한다. 이하 같 대 미만 으로 하 락 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 의 일부 를 지급 하는 제 도(이하 “농산물 적정가격 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에 게 지급 하는 차 액의 한 도는 해 당 농산 물 평년	부장관이 제16조의 3에 따른 농산물가 격안정심 의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고 시 한 가 격 을 말 한다. 이하 같 대 미만 으로 하 락 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 의 전부 또는 일 급 하는 제도(이하 “농산 물가격안 정제도” 라 한다) 를 실시 하 여 야 한다.	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제16조의 3에 따른 농산물가 격안정심 의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고 시 한 가 격 을 말 한다. 이하 같 대 미만 으로 하 락 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 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 급 하는 제도(이하 “농산 물가격안 정제도” 라 한다) 를 실시 하 여 야 한다.	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제16조의 3에 따른 농산물가 격안정심 의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고 시 한 가 격 을 말 한다. 이하 같 대 미만 으로 하 락 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 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 급 하는 제도(이하 “농산 물가격안 정제도” 라 한다) 를 실시 하 여 야 한다.	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제16조의 3에 따른 농산물가 격안정심 의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고 시 한 가 격 을 말 한다. 이하 같 대 미만 으로 하 락 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 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 급 하는 제도(이하 “농산 물가격안 정제도” 라 한다) 를 실시 하 여 야 한다.	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제16조의 3에 따른 농산물가 격보장심 의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고 시 한 가 격 을 말 한다. 이하 같 대 미만 으로 하 락 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 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 급 하는 제도(이하 “농산 물가격보 장제도” 라 한다) 를 실시 하 여 야 한다.

현 행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대상 품목별 해당 연도 총생산량(비축 농산물 및 수입농산물을 포함한다)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미곡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현 행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u>생 산 된</u> <u>품 목 에</u> <u>한정하여</u> <u>실 시 할</u> <u>수 있다.</u>	<u>생 산 된</u> <u>미 곡 에</u> <u>한정하여</u> <u>실시한다.</u>	<u>품 목 에</u> <u>한정하여</u> <u>실 시 할</u> <u>수 있다.</u>	<u>품 목 에</u> <u>한정하여</u> <u>실 시 할</u> <u>수 있다.</u>	<u>품 목 에</u> <u>한정하여</u> <u>실 시 할</u> <u>수 있다.</u>	<u>품 목 에</u> <u>한정하여</u> <u>실 시 할</u> <u>수 있다.</u>	<u>품 목 에</u> <u>한정하여</u> <u>실 시 할</u> <u>수 있다.</u>
	<u>③ 농림</u> <u>축산식품</u> <u>부장관은</u> <u>다음 각</u> <u>호에 대</u> <u>한 사항</u> <u>에 대하</u> <u>여 농산</u> <u>물수급관</u> <u>리위원회</u> <u>의 심의</u> <u>를 거쳐</u> <u>확정하고</u> <u>이를 고</u> <u>시한다.</u> <u>1. 국민의</u> <u>식생활</u> <u>에 중대</u> <u>한 영향</u> <u>을 미치</u> <u>는 채소,</u> <u>과일 등</u> <u>농산물</u> <u>가격안</u> <u>정제도</u> <u>가 필요</u> <u>한 대상</u> <u>품목</u>	<u>③ 농림</u> <u>축산식품</u> <u>부장관은</u> <u>국 민 의</u> <u>식생활에</u> <u>중 대 한</u> <u>영 향 을</u> <u>미 치 는</u> <u>밀과 콩</u> <u>을 포함</u> <u>한 양곡,</u> <u>채소, 과</u> <u>일 등 농</u> <u>산물가격</u> <u>안정제도</u> <u>가 필요</u> <u>한 대상</u> <u>품 목 을</u> <u>제16조의</u> <u>3에 따른</u> <u>농산물가</u> <u>격안정심</u> <u>의위원회</u> <u>의 심의</u> <u>를 거쳐</u> <u>확정하고</u> <u>이를 고</u> <u>시한다.</u> <u>매년 확</u> <u>정 하 고</u> <u>이를 고</u> <u>시한다.</u>	<u>② 농림</u> <u>축산식품</u> <u>부장관은</u> <u>국 민 의</u> <u>식생활에</u> <u>중 대 한</u> <u>영 향 을</u> <u>미 치 는</u> <u>채소, 과</u> <u>일 등 농</u> <u>산물가격</u> <u>안정제도</u> <u>가 필요</u> <u>한 대상</u> <u>품 목 을</u> <u>제16조의</u> <u>3에 따른</u> <u>농산물가</u> <u>격안정심</u> <u>의위원회</u> <u>의 심의</u> <u>를 거쳐</u> <u>확정하고</u> <u>이를 고</u> <u>시한다.</u>	<u>② 농림</u> <u>축산식품</u> <u>부장관은</u> <u>국 민 의</u> <u>식생활에</u> <u>중 대 한</u> <u>영 향 을</u> <u>미 치 는</u> <u>채소, 과</u> <u>일 등 농</u> <u>산물가격</u> <u>안정제도</u> <u>가 필요</u> <u>한 대상</u> <u>품 목 을</u> <u>제16조의</u> <u>3에 따른</u> <u>농산물가</u> <u>격안정심</u> <u>의위원회</u> <u>의 심의</u> <u>를 거쳐</u> <u>확정하고</u> <u>이를 고</u> <u>시한다.</u>	<u>② 농림</u> <u>축산식품</u> <u>부장관은</u> <u>국 민 의</u> <u>식생활에</u> <u>중 대 한</u> <u>영 향 을</u> <u>미 치 는</u> <u>채소, 과</u> <u>일 등 농</u> <u>산물가격</u> <u>안정제도</u> <u>가 필요</u> <u>한 대상</u> <u>품 목 을</u> <u>제16조의</u> <u>3에 따른</u> <u>농산물가</u> <u>격안정심</u> <u>의위원회</u> <u>의 심의</u> <u>를 거쳐</u> <u>확정하고</u> <u>이를 고</u> <u>시한다.</u>	<u>② 농림</u> <u>축산식품</u> <u>부장관은</u> <u>국 민 의</u> <u>식생활에</u> <u>중 대 한</u> <u>영 향 을</u> <u>미 치 는</u> <u>채소, 과</u> <u>일 등 농</u> <u>산물가격</u> <u>안정제도</u> <u>가 필요</u> <u>한 대상</u> <u>품 목 을</u> <u>제16조의</u> <u>3에 따른</u> <u>농산물가</u> <u>격안정심</u> <u>의위원회</u> <u>의 심의</u> <u>를 거쳐</u> <u>확정하고</u> <u>이를 고</u> <u>시한다.</u>	<u>② 농림</u> <u>축산식품</u> <u>부장관은</u> <u>국 민 의</u> <u>식생활에</u> <u>중 대 한</u> <u>영 향 을</u> <u>미 치 는</u> <u>채소, 과</u> <u>일 등 농</u> <u>산물가격</u> <u>안정제도</u> <u>가 필요</u> <u>한 대상</u> <u>품 목 을</u> <u>제16조의</u> <u>3에 따른</u> <u>농산물가</u> <u>격보장심</u> <u>의위원회</u> <u>의 심의</u> <u>를 거쳐</u> <u>확정하고</u> <u>이를 고</u> <u>시한다.</u>
	<u>2. 확정</u> <u>· 고시</u>	<u>④ 농림</u> <u>축산식품</u>	<u>③ 농림</u> <u>축산식품</u>	<u>③ 농림</u> <u>축산식품</u>	<u>③ 농림</u> <u>축산식품</u>	<u>③ 농림</u> <u>축산식품</u>	<u>③ 농림</u> <u>축산식품</u>

현 행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상 품목의 기준가격	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정책제도에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보장제도에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보장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현 행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u>농산물가격안정심</u> <u>의위원회</u> <u>의 심의</u> <u>를 거쳐</u> <u>매년 확</u> <u>정 하 고</u> <u>이를 고</u> <u>시한다.</u>	<u>농산물가격안정심</u> <u>의위원회</u> <u>의 심의</u> <u>를 거쳐</u> <u>확정하고</u> <u>이를 고</u> <u>시한다.</u>	<u>농산물가격안정심</u> <u>의위원회</u> <u>의 심의</u> <u>를 거쳐</u> <u>확정하고</u> <u>이를 고</u> <u>시한다.</u>	<u>농산물가격안정심</u> <u>의위원회</u> <u>의 심의</u> <u>를 거쳐</u> <u>확정하고</u> <u>이를 고</u> <u>시한다.</u>	<u>농산물가격안정심</u> <u>의위원회</u> <u>의 심의</u> <u>를 거쳐</u> <u>확정하고</u> <u>이를 고</u> <u>시한다.</u>	<u>농산물가격보장제도</u> <u>의 적</u> <u>용을 받</u> <u>는 품목</u> <u>외의 농</u> <u>산 물 에</u> <u>대 하 여</u> <u>농산물가격보장제</u> <u>도를 실</u> <u>시 하 는</u> <u>경우 이</u> <u>에 소요</u> <u>되는 비</u> <u>용의 전</u> <u>부 또는</u> <u>일 부 를</u> <u>지 원 할</u> <u>수 있다.</u>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제16조의2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①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농 산물의 가격 불 안정에 따른 농 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 고 수급 을 안정 시켜 소 비자를 보호하 며 식 량안보 를 강화 하기 위 하여 제 3 항에 따라 확 정·고 시된 농 산물의 시장가 격이 기 준가격 [평년 가격(직 전 5년 중 최저 가격과 최고가 격을 제 외한 평 균가격	⇒	제9조의5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①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농 산물의 가격 불 안정에 따른 농 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 고 수급 을 안정 시켜 소 비자를 보호하 며 식 량안보 를 강화 하기 위 하여 제 3 항에 따라 확 정·고 시된 농 산물의 시장가 격이 기 준가격 [평년 가격(직 전 5년 중 최저 가격과 최고가 격을 제 외한 평 균가격	제16조의2 (농산물 적정가 격보장 제 도) ①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농 산물의 가격 불 안정에 따른 농 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 고 수급 을 안정 시켜 소 비자를 보호하 며 식 량안보 를 강화 하기 위 하여 제 3 항에 따라 확 정·고 시된 농 산물의 시장가 격이 기 준가격 [평년 가격(직 전 5년 중 최저 가격과 최고가 격을 제 외한 평 균가격	제16조의2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①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농 산물의 가격 불 안정에 따른 농 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 고 수급 을 안정 시켜 소 비자를 보호하 며 식 량안보 를 강화 하기 위 하여 제 3 항에 따라 확 정·고 시된 농 산물의 시장가 격이 기 준가격 [평년 가격(직 전 5년 중 최저 가격과 최고가 격을 제 외한 평 균가격	제16조의2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①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농 산물의 가격 불 안정에 따른 농 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 고 수급 을 안정 시켜 소 비자를 보호하 며 식 량안보 를 강화 하기 위 하여 제 3 항에 따라 확 정·고 시된 농 산물의 시장가 격이 제 3 항에 따라 확 정·고 시된 기 준가격 [평년 가격(직 전 5년 중 최저 가격과 최고가 격을 제 외한 평 균가격	제16조의2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①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농 산물의 가격 불 안정에 따른 농 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 고 수급 을 안정 시켜 소 비자를 보호하 며 식 량안보 를 강화 하기 위 하여 제 3 항에 따라 확 정·고 시된 농 산물의 시장가 격이 기 준가격 [평년 가격(직 전 5년 중 최 저가격 과 최고 가격을 제외한 평균가	제16조의2 (농산물 가격보 장제도) ①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농 산물의 가격 불 안정에 따른 농 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 고 수급 을 안정 시켜 소 비자를 보호하 며 식 량안보 를 강화 하기 위 하여 제 3 항에 따라 확 정·고 시된 기 준가격 [평년 가격(직 전 5년 중 최 저가격 과 최고 가격을 제외한 평균가	- 윤준병 의원안 : 중전 대안 과 달리, 원칙적 재 량 예외 적 의무 조항으로 변경 - 문대림 의원안 : 중전 대안 과 달리, 지급한도 를 규정 - 송옥주 의원안 : 지구 정리 - 여기구· 이원택 의원안 : 중전 대안 과 동일 - 문금주 의원안 : 안 제3항 에서 시 장가격이 아닌 기 준가격을 고시하도 록 하므 로 이에 맞게 수 정 - 박수현 의원안 : 제도 등 명칭 변경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을 말한 다) 을 기준으 로 하되 생산비 용 및 수 급 상황 등 을 고 려하고 예산의 범위에 서 대통 령령으 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 정한 가 격으로 서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이 제 16조의 B에 따 른 농 산물가 격안정 심의회 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 시한 가 격을 말 한 다. 이하 같 대 미 만으로 하락하 는 경우 생산자 에게 그		을 말한 다) 을 기준으 로 하되 생산비 용 및 수급 상 황 등을 고려하 고 예산 의 범위 에서 대 통령령 으로 정 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 로서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수급관 리위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고 시한 가 격을 말 한 다. 이하 같 대 미 만으로 하락하 는 경우 생산자 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 는 일부 를 지급	균가격 을 말한 다 이 하 같다 을 기 초로 하 되 생산 비용 및 물가상 승률 등 을 고 려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정 한 가격 으로서 농림축 산식품 부장관 이 제16 조의3 에 따 른 농 산물적 정가격 심의회 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 시한 가 격을 말 한 다. 이하 같 대 미 만으로 하락하 는 경우 생산자 에게 그	을 말한 다) 을 기준으 로 하되 생산비 용 및 수급 상 황 등을 고려하 여 대 통령령 으로 정 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 로서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제16조 의3에 따른 농 산물가 격안정 심의회 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 시한 가 격을 말 한 다. 이하 같 대 미 만으로 하락하 는 경우 생산자 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 는 일부	을 말한 다) 을 기준으 로 하되 생산비 용 및 수급 상 황 등을 고려하 고 예산 의 범위 에서 대 통령령 으로 정 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 로서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제16조 의3에 따른 농 산물가 격안정 심의회 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 시한 가 격을 말 한 다. 이하 같 대 미 만으로 하락하 는 경우 생산자 에게 그 차액의	을 말한 다) 을 기준으 로 하되 생산비 용 및 수급 상 황 등을 고려하 고 예산 의 범위 에서 대 통령령 으로 정 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 로서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제16조 의3에 따른 농 산물가 격안정 심의회 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 시한 가 격을 말 한 다. 이하 같 대 미 만으로 하락하 는 경우 생산자 에게 그 차액의	격을 말 한다)을 기준으 로 하되 생산비 용 및 수급 상 황 등을 고려하 고 예산 의 범위 에서 대 통령령 으로 정 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 로서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제16조 의3에 따른 농 산물가 격안정 심의회 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 시한 가 격을 말 한 다. 이하 같 대 미 만으로 하락하 는 경우 생산자 에게 그 차액의	을 말한 다) 을 기준으 로 하되 생산비 용 및 수급 상 황 등을 고려하 고 예산 의 범위 에서 대 통령령 으로 정 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 로서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제16조 의3에 따른 농 산물가 격보장 심의회 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 시한 가 격을 말 한 다. 이하 같 대 미 만으로 하락하 는 경우 생산자 에게 그 차액의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차액의 전 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 는 제도 (이하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라 한다) 를 실 시하여 야 한 다		하는 제 도(이하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라 한 다)를 실시할 수 있 다 다 만 제 조에 따 른 농산 물수급 안정대 책을 수 립·시 행하였 음에도 불구하 고 제 항에 따 라 확정 ·고시 된 대상 품목별 해당 연 도 총생 산량비 축농산 물 및 수입농 산물을 포함한 다) 이 같은 연 도 총소 비량을 초과하 는 경우 가격안 정제도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 는 제도 (이하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라 한 다)를 실시하 여야 한 다. 이 경 우 생 산자에 게 지 급하는 차액의 한도는 해 당 농산물 평년가 격의 10 0분의 1 5로 한 다	를 지급 하는 제 도(이하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라 한 다)를 실시하 여야 한 다	전부 또 는 일부 를 지급 하는 제 도(이하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라 한다) 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전부 또 는 일부 를 지급 하는 제 도(이하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라 한다) 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전부 또 는 일부 를 지급 하는 제 도(이하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라 한다) 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전부 또 는 일부 를 지급 하는 제 도(이하 “농산물 가격보 장제도” 라 한다) 를 실시 하여야 한다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농 산물가 격안정 제도의 대상 농 자는 대 통령령 으로 정 하는 기 준연도 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서 생산 된 품목 에 한정 하여 실 시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 른 농산 물가격 안정제 도의 대 상 농지 는 대통 령령으 로 정하 는 기준 연도에 품목 재 배에 이 용된 농 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정하 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미곡 에 대하 여 농산 물적정 가격제 도를 실 시하는 경우 대 통령령 으로 정 하는 시 기에 미 곡 재배 에 이용 된 농지 에서 생 산된 미 곡에 한 정하여 실시한 다	다만 농 산물가 격안정 제도의 대상 농 자는 대 통령령 으로 정 하는 기 준연도 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서 생산 된 품목 에 한정 하여 실 시할 수 있다	다만 농 산물가 격안정 제도의 대상 농 자는 대 통령령 으로 정 하는 기 준연도 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서 생산 된 품목 에 한정 하여 실 시할 수 있다	다만 농 산물가 격안정 제도의 대상 농 자는 대 통령령 으로 정 하는 기 준연도 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서 생산 된 품목 에 한정 하여 실 시할 수 있다	다만 농 산물가 격보장 제도의 대상 농 자는 대 통령령 으로 정 하는 기 준연도 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서 생산 된 품목 에 한정 하여 실 시할 수 있다	다만 농 산물가 격보장 제도의 대상 농 자는 대 통령령 으로 정 하는 기 준연도 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서 생산 된 품목 에 한정 하여 실 시할 수 있다	- 윤준병 의원안 : 중전 대안 의 제항 단체 제 항으로 분 리 - 문대림 의원안 : 제한 규정 의 대상 을 미곡 으로 한 정 - 송옥주· 어기구· 문금주· 이원택· 박수현 의원안 : 중전 대안 과 동일
②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국 민의 식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 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	③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다 음 각 호 에 대 한 사항에 대하여 농산물 수급관 리위원 회 의 심의를	③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국 민의 식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 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②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국 민의 식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 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②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국 민의 식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 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②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국 민의 식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 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②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국 민의 식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 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②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은 국 민의 식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 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보 장제도	- 윤준병 의원안 : 중전 대안 의 제항 부터 제 항을 한 개의 항으 로 통합 - 문대림 의원안 : 대상 품목 에 밀과 콩을 포함 한 양곡을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가 필 요 한 대 상 품목을 제16조 의3에 따 른 농산물 가격안 정심의 위원회 의 심 의 를 거 쳐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거 처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1. 국민 의 식 생 활 에 중 대 한 영 향 을 미 치 는 채소, 과 일 등 농 산 물 가 격 안 정 제 도 가 필 요 한 대 상 품 목	채 소, 과 일 등 농 산 물 적 정가 제도가 필요한 대 상 품목을 제16조 의3에 따 른 농산물 적정가 격심의 위원회 의 심 의 를 거 쳐 매 년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가 필요 한 대상 품목을 제16조 의3에 따른 농 산물가 격안정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가 필요 한 대상 품목을 제16조 의3에 따른 농 산물가 격안정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가 필요 한 대상 품목을 제16조 의3에 따른 농 산물가 격안정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가 필요 한 대상 품목을 제16조 의3에 따른 농 산물가 격안정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박수현 의원안 의 심 의 를 거 쳐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명시 - 송옥주· 여기구· 문금주· 이원택 의원안 : 중전 대안 과 동일 - 박수현 의원안 : 제도 등 명칭 변경
③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 은 제2 항 에 따 라 확 정·고 시 된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대 상 품목의 기준가 격 을	⇒	2. 확정 · 고 시 된 농 산 물 가 격 안 정 제 도 대 상 품 목 의 기 준 가 격	④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 은 제3 항 에 따 라 확 정·고 시 된 농산물 적정가 격제도 대 상 품목의 기준가 격 을	③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은 제2 항 에 따 라 확 정·고 시 된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대 상 품목의 기준가 격 을	③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은 제2 항 에 따 라 확 정·고 시 된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대 상 품목의 기준가 격 을	③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 은 제2 항 에 따 라 확 정·고 시 된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대 상 품목의 기준가 격 을	③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은 제2 항 에 따 라 확 정·고 시 된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대 상 품목의 기준가 격 을	③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은 제2 항 에 따 라 확 정·고 시 된 농산물 가격보 장제도 대 상 품목의 기준가 격 을	- 윤준병 의원안 : 중전 대안 의 제항 부터 제4 항을 한 개의 항으 로 통합 - 문대림 의원안 : 제도 등 명칭 변경 및 매년 확 정 하 도 록 규정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가격안 정심의 위원회 의 심 의 를 거 처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적정가 격심의 위원회 의 심 의 를 거 처 매 년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가격안 정심의 위원회 의 심 의 를 거 처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가격안 정심의 위원회 의 심 의 를 거 처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가격안 정심의 위원회 의 심 의 를 거 처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가격안 정심의 위원회 의 심 의 를 거 처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가격보 장심의 위원회 의 심 의 를 거 처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 송옥주· 여기구· 문금주· 이원택 의원안 : 중전 대안 과 동일 - 박수현 의원안 : 제도 등 명칭 변경
④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 은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의 차 액기준 가격과 시장가 격 의 차이를 말한다. 이 하 같 다) 지급비 율 을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가격안 정심의 위원회	⇒	3. 농 산물 가격 안정 제도의 차액 (기 준가 격과 시장 가격 의 차이 를 말한 다 . 이하 같다) 지급 비율	⑤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 은 농산물 적정가 격제도 의 차 액기준 가격과 시장가 격 의 차이를 말한다. 이 하 같 다) 지급비 율 을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적정가 격심의 위원회	④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의 차 액(기 준가격 과 시 장가격 의 차 이 를 말한다. 이 하 같 다) 지급비 율 을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가격안 정심의	④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의 차 액(기 준가격 과 시 장가격 의 차 이 를 말한다. 이 하 같 다) 지급비 율 을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가격안 정심의	④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 은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의 차 액(기준 가격과 시장가 격 의 차이를 말한다. 이 하 같 다) 지급비 율 을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가격안 정심의 위원회	④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안 정제도 의 차 액(기준 가격과 시장가 격 의 차이를 말한다. 이 하 같 다) 지급비 율 을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가격안 정심의 위원회	④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보 장제도 의 차 액(기준 가격과 시장가 격 의 차이를 말한다. 이 하 같 다) 지급비 율 을 제16조 의3 에 따 른 농산물 가격보 장심의 위원회	- 윤준병 의원안 : 중전 대안 의 제2항 부터 제4 항을 한 개의 항으 로 통합 - 문대림 의원안 : 제도 등 명칭 변경 및 매년 확 정 하도록 규정 - 송옥주· 여기구· 문금주· 이원택 의원안 : 중전 대안 과 동일 - 박수현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의 심 의 를 거 처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의 심 의 를 거 처 매 년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위원회 의 심 의 를 거 처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위원회 의 심 의 를 거 처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의 심 의 를 거 처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의 심 의 를 거 처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의 심 의 를 거 처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	의원안 : 제도 등 명칭 변경
<신 설>								⑤ 국가 는 지방 자치단 체가 제 2 항에 따라 농 산물가 격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는 품 목 외의 농산물 에 대하 여 농산 물가격 보장제 도를 실 시하는 경우 이 에 소요 되는 비 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박수현 의원안 : 비용지원 규정 신설 - 그 외 개정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미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산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최저가격보장제도에 해당하는데,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며, 대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1)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사업 현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에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동참함을 전제로, 일부 재원의 자부담 하에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을 운영함.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감소분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제도를 운영함.

①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현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3031-326)”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는 노지채소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도입한 제도임.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의 대상품목은 ① 배추, ② 무, ③ 마늘, ④ 양파, ⑤ 건고추, ⑥ 겨울대파, ⑦ 고랭지감자의 7개 품목임.

2024년에는 당초 농안기금으로 551억 9,000만원이 계획되었으나 201억 9,000만원으로 수정되어 58억 8,000만원이 집행(53억 5,700만원 실행)되었고, 2025년에는 207억 1,600만원의 지출이 계획됨.

【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현황 】

(단위: 억원, %)

연번	구분	'16 (시범)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신규 품목	배추 (여름, 겨울), 무 (겨울)	배추 · 무 (전작 형) 양파, 마늘	고추, 대파	-	감자	-	-	-	-	-
2	사업 예산	20	100	168	186	255	341	404	552	552	20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5. 23.

【 최근 5년간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연번	연도	실집행액	품목별 실집행액
1	2020년	21,337	배추(966), 무(6,994), 양파(6), 마늘(12,116), 고추(1), 대파(1,245), 감자(9)
2	2021년	7,896	배추(1,370), 무(1,103), 양파(19), 마늘(5,305), 대파(99)
3	2022년	5,032	배추(933), 무(1,291), 양파(2,149), 대파(659)
4	2023년	5,341	배추(2,540), 무(1,270), 양파(0.1), 마늘(1,531)
5	2024년	5,357	배추(2,610), 무(1,887), 마늘(8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5. 23.

참고로, 2024년도 사업의 실집행액인 53억 5,700만원은 배추·무·마늘의 3개 품목에 대하여 집행됨.

채소가격안정제도는 생산자로 하여금 면적조절·출하정지·출하장려(조기출하) 등의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대상 품목이 평년가격 대비 하락하는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임.

【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주요내용 】

- (주요내용) 생산자(농업인·농협, 산지유통인)가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평년가격 대비 하락시는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 (의무사항) 수급상황에 따라 계약물량의 50%까지 면적조절(생육단계 폐기), 출하정지, 출하장려(조기출하)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
 - (과잉시) 가입물량의 50%까지 출하前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시기 조절 등을 이행, 출하물량을 감축하거나 홍수출하 방지
 - (부족시) 가입물량의 50%까지 출하시기 조절, 도매시장 집중 출하 등을 이행, 도매시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
- (지원사항) 공동재원을 활용해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평년 가격의 최대 80% 수준 보장
 - 부담률: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경제지주 10, 사업농협 10), 농업인 20%
 - 산지유통인(배추·무 일부작형)의 경우: 국고 50%, 자부담 50%
- (추진체계) 지자체·농협·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급대책 수립·추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5. 23.

세부적인 사업 운영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가격하락(공급과잉) 시에는 생산자에게 면적조절·출하정지 등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이 요구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함.

【 채소가격 안정지원 ①: 가격하락 시 수급조절에 따른 비용 보전 】

- (보전방법) 출하대기 포전을 확정(지자체 실사) 후 포전정리 및 손실보전
- 보전금액 : 보전기준액[(기준가격 × 농업인수취율) - 출하비용] × 출하정지 면적
 - * 면적 조절은 생육률(65%, 70%, 75%, 80%)도 곱하여 산출
- (보전사례) 전남 겨울배추('23. 1월 중순~2월 하순) 출하정지
- 대상면적(물량) : 80ha(7,273톤), 지원단가 : 7,065원/3.3m²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5. 23.

둘째, 가격하락에 따른 수급조절 의무 이행 외에,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가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가격(서울 가락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 선에서 가격차를 보전하게 됨.

【 채소가격 안정지원 ②: 가격하락 시 가격차 보전 】

- (보전방법) 당해 연도 (가락)도매시장 (순별)거래가격이 평년 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을 보전
- 보전금액 : [보전기준가격(B) - 거래가격(C)] X 개인별 출하물량
- | | |
|-------------|---|
| | ←기준가격(A) : 가락시장 5개년 평년가격(가장 높은·가장 낮은 가격 제외) |
| | ←보전기준가격(B) : 기준가격(A)의 80% |
| 보전금액 | ←거래가격(C) : 가락시장 순별 평균 경락가격(개인별 경락가격 x) |
| | ←최저기준가격(D) : 기준가격(A)의 60% |

- (보전사례) 제주 조생양파('22. 3월 하순~5월 상순, 8,541톤/420백만원)

(단위: 원/kg)

순기별	시장가격					보전기준 가격(80%)	최저기준 가격(60%)	차액 (보전단가)
	특	상	중	하	평균			
3월 하	618	393	256	160	303	794	595	199
4월 상	841	492	289	146	359	781	586	195
5월 상	666	551	478	335	484	577	433	93

※ 거래가격이 최저기준가격보다 낮더라도 보전기준가격과 최저기준가격 차액만 보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5. 23.

다만, 동 제도는 최저기준가격을 기준가격의 60% 선으로 설정하여, 실제 가격이 최저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전기준가격과 실제 가격 간 차이가 아닌 보전기준가격과 최저기준가격의 차액, 즉 기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함.

예를 들어, 2022년에 제주 조생양파에 대하여 가격차 보전이 이루어졌는데, 순기(旬期)³⁸⁾별로 5월 상순에만 시장 평균가격이 최저기준가격보다 높아, 보전기준가격과 시장 평균가격간 차액이 보전되었음.

셋째, 가격상승(공급부족) 시에는 오히려 생산자에게 수급조절 의무로서 출하장려(조기출하)가 요구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생산자에게 출하장려금을 지급함.

【 채소가격 안정지원 ③: 가격상승 시 수급조절에 따른 출하장려금 지급 】

□ (보전방법)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의 상승단계에 따라 차등지급

- 보전금액 : (주의) 운송비, (경계) 운송비·출하작업비,
(심각) 운송비·출하작업비·상장수수료

□ (보전사례) 강원 고랭지 배추('22. 9월 상순, 위기단계: '심각')

- 대상물량 : 1,485톤(165대)/248백만원
- 출하장려금 지급내역(900망/대)

운송비	작업비	상장수수료(50%)	합 계
450천원	450천원	606천원	1,506천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5. 23.

38) 1개월을 10일 단위(상순, 중순, 하순)로 구분하는 기간 개념

예를 들어 2022년 9월에는 강원 지역 고랭지 배추에 대한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상의 위기단계가 “심각”이 됨에 따라, 출하장려 조치와 함께 운송비·출하작업비·상장수수료가 출하장려금으로 지급됨.

【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中 위기단계 구분 】

연번	단계	상황
1	안정	통상적 변동 폭 이내로 가격이 형성되는 상태
2	주의	다소간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경계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3	경계	상당한 수급 불균형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상태
4	심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로 수급대책을 실시하는 상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2024.

전체 생산량 대비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의 가입물량, 즉 가입률은 2024년 기준 19.2% 수준에 해당하는데, 품목별 가입률에는 추세상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 품목의 가입률은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가입률(전체 생산량 대비) 】

(단위: %)

연번	품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배추	7.9	7.1	10.9	14.9	14.8
2	무	36.8	28.8	31.6	38.0	31.6
3	마늘	21.1	36.1	18.8	14.9	14.6
4	양파	9.8	11.0	13.5	11.5	17.1
5	고추	0.4	0.3	0.3	0.6	0.6
6	겨울대파	12.7	25.4	14.3	15.2	17.0
7	고랭지감자	8.3	7.9	7.5	7.3	8.7
전체		15.2	15.5	16.5	17.7	19.2

주: 전체 실적에서 서류에 해당하는 고랭지감자는 제외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5. 23.

② 농업수입안정보험 운영 현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³⁹⁾의 일환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NH농협손해보험을 통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함.

【 농업수입안정보험 개요 】

- ☐ (개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나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을 보상하는 보험(∼'15년)
- ☐ (가입대상)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단, 최소가입기준 충족 필요)
 - 최소가입기준: 품목별 평균 보험가입금액당 재배면적을 고려해 500만원 이내 설정
- ☐ (보험료지원) 순보험료의 50% 수준 국고 지원
 - 단, 가입 시 선택하는 보장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
- ☐ (대상품목) 15개
 - 콩, 고구마, 감자(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감자), 보리, 옥수수,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벼, 가을배추, 가을무, 복숭아, 감귤(만감류), 단감
- ☐ (보상손해)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병충해(일부품목), 가격하락
- ☐ (자기책임 강화)
 - 보험료 지원 상한 설정(호당 5천만원)
 - 농가별 보험료 최소 부담기준 설정(순보험료의 15%)
 - 최소가입기준 상향(기준수입 500만원)
- ☐ (상품유형)
 - (과거수입형) 기준수입 산정 시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
 - (기대수입형) 수확기가격 상승 시 기준수입에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
 - (실수입형)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5. 15.

39)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나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수입의 감소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가가 수평하게 되는 보험금의 수준은 가입 시 선택한 보장수준에 따라 다름.

농가는 가입시 보장수준으로 ① 60%, ② 70%, ③ 80% 및 ④ 85%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보장수준인 85%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정책에 참여한 농가에 한해서만 선택할 수 있음.

【 농업수입안정보험 보험금 지급 방식 】

□ (보상기준) 가입연도 수입(당해연도 수입)이 과거의 평균적 수입(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

○ 보장수준: 가입 시 60%, 70%, 80%, 85% 중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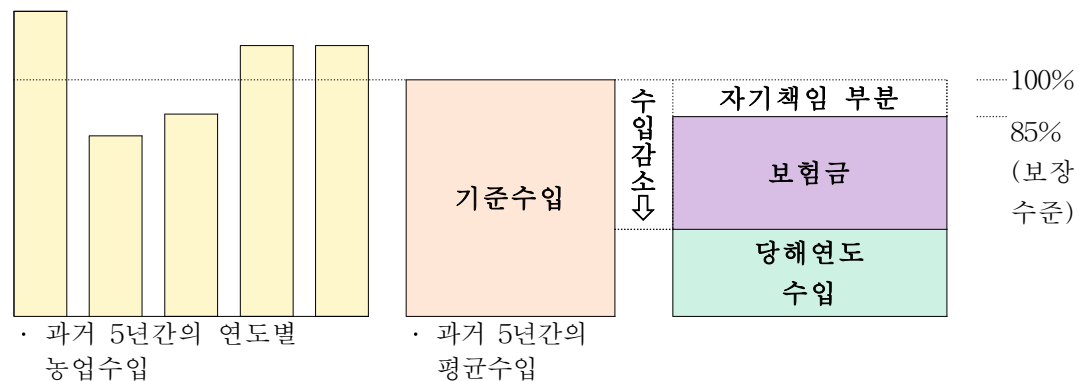
○ 단, 85%의 보장수준은 수급 정책 참여 시에만 선택 가능

□ (보험금 산정)

○ 농가수입 등 산출방법

구 분	산출방법
수 입	가입 농지 또는 과수원별 '수확량'에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정
수확량	손해평가인력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파악
가 격	가락도매시장 가격 등과 같이 대표성·객관성·충분성 등을 갖춘 가격자료를 기초로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농업정책 보험금유원이 산정·공시

○ 보험금 산정방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5. 15.

각 농가는 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수입을 기준으로 보장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당해연도 수입을 제외한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됨.

참고로, 수입안정보험은 “농업재해보험(1031-300, 농특회계)”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입안정보험” 사업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81억원이 편성되어 69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997억 1,700만원이 증액된 2,078억 1,700만원이 편성됨.

【 '24~'25년 “수입안정보험” 사업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농업재해보험	657,104	741,579	711,892 [711,408]	29,687	-	801,929
수입안정보험	8,100	6,910	6,910 [6,698]	-	-	207,8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1권, 2025, p. 765.

(3) 검토의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에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동참함을 전제로, 일부 재원의 자부담 하에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을 운영함.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감소분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제도를 운영함.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한 농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자의 수입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기존의 유사 제도와는 농가에게 자부담액, 수급조절 참여의무 등이 없다는 차이가 있음.

【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현행 제도 비교 】

연번	구분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수입안정보험
1	보전금액	기준가격(별도 설정) 과 시장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기준가격(평년가격) 과 시장가격 간 차액의 일부	기준수입의 보장 수준과 당해연도 수입 간 차액
2	자부담	없음	농업인: 20% 산지유통인: 50%	보험료 납부
3	수급조절 참여	자율	의무	조건부 (85% 보장수준 선택조건)

자료: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1.

개정안은 대상 품목의 생산자에게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지급하려는 것이므로,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임.

이와 같은 가격안정(보장)제도에 대하여 2023년에 ‘한국농업경제학회’⁴⁰⁾에서 대상품목을 ① 배추, ② 무, ③ 고추, ④ 마늘 및 ⑤ 양파의 5개 농산물로 하여, 제도의 적용 물량 및 기준가격 설정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정한 바 있음.⁴¹⁾

첫째, 전면시행(모든 물량 적용) 시 기준가격 설정 방식이 ① 생산비 보전이라면 611억원, ② 생산비·유통비 보전이라면 7,245억원, ③ 평년가격 기준이라면 1조 1,006억원의 재정소요가 추정됨.

둘째, 50% 물량에 대하여 시행 시 기준가격 설정 방식이 ① 생산비 보전이라면 305억원, ② 생산비·유통비 보전이라면 3,632억원, ③ 평년가격 기준이라면 5,503억원의 재정소요가 추정됨.

【 한국농업경제학회 추정 재정소요액(2023년 기준) 】

연번	시행방식 (적용물량)	생산비 보전	생산비·유통비 보전	평년가격 기준
1	전면시행 (100%)	611억원	7,245억원	1조 1,006억원
2	부분시행 (50%)	305억원	3,632억원	5,503억원

자료: 한국농업경제학회, “농가 경영소득 안정을 위한 수급정책 개선방안 연구”, 2023.

40) 농업경제에 대한 학술단체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임(2025. 5. 13. 기준)

41) 한국농업경제학회, “농가 경영소득 안정을 위한 수급정책 개선방안 연구”, 2023.

이는 2023년 추정 자료라는 점, 추정액일 뿐 실제 소요액은 아니라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검토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개정안은 대상 품목 중 적용 물량에 대해서,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 100% 물량의 전면시행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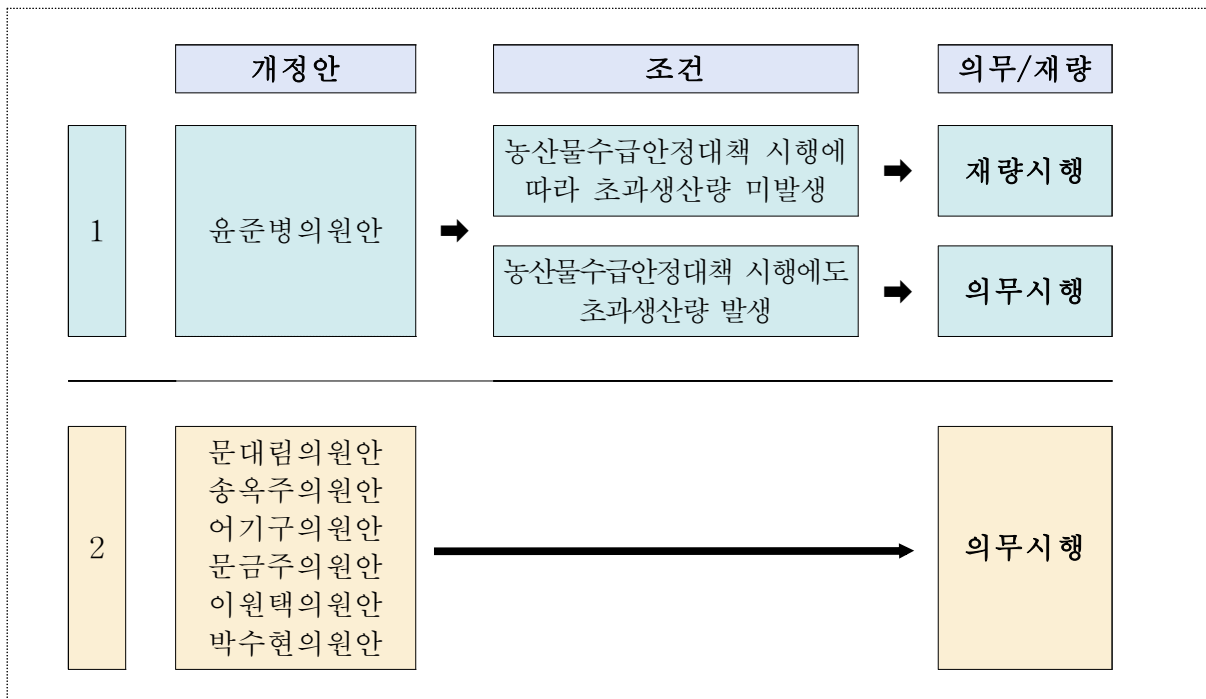
따라서, 개정안은 기존 유사 제도와 차이점이 있고,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므로, 제도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의 필요성 측면과 이에 따른 영향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개정안별로 세부적으로 상이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별로 제도의 운영 방식이 상이한 측면이 있는데, 윤준병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시행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재량사항으로 하되, 농산물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에도 초과생산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조건부 의무 방식으로 함.

반면, 다른 개정안의 경우 제도의 대상 품목이기만 한다면 별도의 조건 없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별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의무/재량 시행 여부 】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1.

따라서, 두 가지 운영 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윤준병의원안이 안 제5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안정대책과 연계하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도의 대상 농산물 범위가 일부 상이할 수 있는데, 문대림의원안은 안 제16조의2제3항에서 양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에 양곡을 포함함.

이는 문대림의원원이 다른 의원과 달리, ‘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서 양곡까지 일괄하여 다루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따라서, 문대림의원안과 같이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양곡을 포함할지, 혹은 양곡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에서 별도로 다룰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임.

셋째, 박수현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안 제16조의2제5항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외의 품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려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한다면, 농산물의 주산지나 지역에 따라 상이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도 운영 품목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형평성 측면이 문제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없는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여 집행함에 따라 과도한 국가재정 소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의 자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윤준병의원안 제9조의2제3항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각 호로 나열하여 하나의 항에서 일괄하여 규정하는데, 규정의 가독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어 보임.

둘째, 각 개정안의 제1항에서 “농가 경영위험”을 “농가의 경영위험”으로, “수급을 안정시켜”를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켜”로, “평년 가격”

을 “평년가격”으로, “수급 상황”을 “수급상황”으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윤준병의원안의 제2항 또는 송옥주의원안·어기구의원안·문금주의원안·이원택의원안·박수현의원안 제1항 단서에서는 대상 농지를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① ‘대상 농지’를 특정한 ‘품목’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문언은 주술 관계가 맞지 않아 보이고, ② “품목 재배”가 의미하는 바가 동일한 품목을 재배한 농지라는 것인지, 동일하지 않더라도 제도의 대상 품목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가 모호해 보임.

다만, 특정 농가가 재배하는 농산물이 자주 변화하는 경우 농산물의 수급관리 측면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동일한 품목을 재배한 농지일 수 있어 보임.

따라서, 이를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동일한 품목의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로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려는 것임(문대림의원안·송옥주의원안·어기구의원안·문금주의원안·이원택의원안·박수현의원안 제16조의3 신설).

참고로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윤준병의원안 제5조의5에 따라 설치하는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규정함.

현 행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어기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신 설>	제16조의3(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 ①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 품목의 선정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 품목의 선정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	제16조의3(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산물가격보장제도가 필요

현 행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u>한 대상 품목</u>	<u>한 대상 품목</u>	<u>한 대상 품목</u>	<u>한 대상 품목</u>
	<u>2 대상 품목의 기준 가격 및 시장가격</u>	<u>2 대상 품목의 기준 가격 및 시장가격</u>	<u>2 대상 품목의 기준 가격 및 시장가격</u>	<u>2 대상 품목의 기준 가격 및 시장가격</u>	<u>2 대상 품목의 기준 가격 및 시장가격</u>	<u>2 대상 품목의 기준 가격 및 시장가격</u>
	<u>3. 차액의 지급비율</u>	<u>3. 차액의 지급비율</u>	<u>3. 차액의 지급비율</u>	<u>3. 차액의 지급비율</u>	<u>3. 차액의 지급비율</u>	<u>3. 차액의 지급비율</u>
	<u>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u>	<u>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u>	<u>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u>	<u>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u>	<u>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u>	<u>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u>
		<u>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행의 주기</u>	<u>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u>	<u>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u>	<u>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u>	<u>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u>
	<u>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	<u>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	<u>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	<u>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	<u>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	<u>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
	<u>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현 행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③ 심의위 원회의 위 원장은 농 림축산식 품부차관 이 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 람 중에서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이 임명 하거나 위 촉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명 이상이 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 무를 담 당 하는 고위공무 원 단 에 속 하 는 공무원 2. 품목별 생산자 를 대표 하는 단 체에서 추천하 는 사람	③ 심의위 원회의 위 원장은 농 림축산식 품부차관 이 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 람 중에서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이 임명 하거나 위 촉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명 이상이 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 무를 담 당 하는 고위공무 원 단 에 속 하 는 공무원 2. 품목별 생산자 를 대표 하는 단 체에서 추천하 는 사람	③ 심의위 원회의 위 원장은 농 림축산식 품부차관 이 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 람 중에서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이 임명 하거나 위 촉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명 이상이 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 무를 담 당 하는 고위공무 원 단 에 속 하 는 공무원 2. 품목별 생산자 를 대표 하는 단 체에서 추천하 는 사람	③ 심의위 원회의 위 원장은 농 림축산식 품부차관 이 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 람 중에서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이 임명 하거나 위 촉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명 이상이 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 무를 담 당 하는 고위공무 원 단 에 속 하 는 공무원 2. 품목별 생산자 를 대표 하는 단 체에서 추천하 는 사람	③ 심의위 원회의 위 원장은 농 림축산식 품부차관 이 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 람 중에서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이 임명 하거나 위 촉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명 이상이 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 무를 담 당 하는 고위공무 원 단 에 속 하 는 공무원 2. 품목별 생산자 를 대표 하는 단 체에서 추천하 는 사람	③ 심의위 원회의 위 원장은 농 림축산식 품부차관 이 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 람 중에서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이 임명 하거나 위 촉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명 이상이 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 무를 담 당 하는 고위공무 원 단 에 속 하 는 공무원 2. 품목별 생산자 를 대표 하는 단 체에서 추천하 는 사람

현 행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3 그 밖에 농산물적 정가격제 도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으로서 농 림축산식 품부령으 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농산물가 격안정제 도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으로서 농 림축산식 품부령으 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농산물가 격안정제 도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으로서 농 림축산식 품부령으 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농산물가 격안정제 도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으로서 농 림축산식 품부령으 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농산물가 격안정제 도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으로서 농 림축산식 품부령으 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농산물가 격보장제 도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으로서 농 림축산식 품부령으 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대안	⇒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제16조의3 (농산물 가격안 정 심의 위원회) ① 농산 물 가격 안정 제 도를 시 행 하기 위한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 하기	⇒	제16조의3 (농산물 적정가 격 심의 위원회) ① 농산 물 적정 가격 제 도를 시 행 하기 위한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 하기	제16조의3 (농산물 가격안 정 심의 위원회) ① 농산 물 가격 안정 제 도를 시 행 하기 위한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 하기	제16조의3 (농산물 가격안 정 심의 위원회) ① 농산 물 가격 안정 제 도를 시 행 하기 위한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 하기	제16조의3 (농산물 가격안 정 심의 위원회) ① 농산 물 가격 안정 제 도를 시 행 하기 위한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 하기	제16조의3 (농산물 가격안 정 심의 위원회) ① 농산 물 가격 안정 제 도를 시 행 하기 위한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 하기	제16조의3 (농산물 가격보 장 심의 위원회) ① 농산 물 가격 보장 제 도를 시 행 하기 위한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 하기	- 문대림 의원안 : ① 제도 명 칭 변경 ② 안 제1 6조의2에 서 매년 확정하도 록 규정함 에 따라 안 제5호 삭제 - 송옥주 의원안 : 자구 수정

종전 대안 ⇨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위 하여 농 립 축 산 식품 부에 농 산물 가 격 안정 심의 위 원회(이 하 “심 의 위 원 회 ” 라 한다)를 둔다.	위 하여 농 립 축 산 식품 부에 농 산물 적 정 가격 심의 위 원회(이 하 “심 의 위 원 회 ” 라 한다)를 둔다.	위 하여 농 립 축 산 식품 부에 농 산물 가 격 안정 심의 위 원회(이 하 “심 의 위 원 회 ” 라 한다)를 둔다.	위 하여 농 립 축 산 식품 부에 농 산물 가 격 안정 심의 위 원회(이 하 “심 의 위 원 회 ” 라 한다)를 둔다.	위 하여 농 립 축 산 식품 부에 농 산물 가 격 안정 심의 위 원회(이 하 “심 의 위 원 회 ” 라 한다)를 둔다.	위 하여 농 립 축 산 식품 부에 농 산물 가 격 안정 심의 위 원회(이 하 “심 의 위 원 회 ” 라 한다)를 둔다.	위 하여 농 립 축 산 식품 부에 농 산물 가 격 보장 심의 위 원회(이 하 “심 의 위 원 회 ” 라 한다)를 둔다.	- 여기구· 문금주·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박수현 의원안 : 제도 명칭 변경
1. 농산 물 가격 안정제 도 가 필요한 대 상 품목	1. 대상 품목의 선정	1. 대상 품목의 선정	1. 농산 물 가격 안정제 도 가 필요한 대 상 품목	1. 농산 물 가격 안정제 도 가 필요한 대 상 품목	1. 농산 물 가격 안정제 도 가 필요한 대 상 품목	1. 농산 물 가격 보장제 도 가 필요한 대 상 품목	
2 ~ 4 (생 략)	2 ~ 4 (생 략)	2 ~ 4 (생 략)	2 ~ 4 (생 략)	2 ~ 4 (생 략)	2 ~ 4 (생 략)	2 ~ 4 (생 략)	
5 제호 부터 제 3호까지 에 해당 하는 사 항에 대 한 선정 및 확정 주기		5 제호 부터 제 3호까지 시행의 주기	5 제호 부터 제 3호까지 에 해당 하는 사 항에 대 한 선정 및 확정 주기	5 제호 부터 제 3호까지 에 해당 하는 사 항에 대 한 선정 및 확정 주기	5 제호 부터 제 3호까지 에 해당 하는 사 항에 대 한 선정 및 확정 주기	5 제호 부터 제 3호까지 에 해당 하는 사 항에 대 한 선정 및 확정 주기	
6 (생 략)	5 (생 략)	6 (생 략)	6 (생 략)	6 (생 략)	6 (생 략)	6 (생 략)	
②(생 략)	②(생 략)	②(생 략)	②(생 략)	②(생 략)	②(생 략)	②(생 략)	- 종전 대안 과 동일
③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③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③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③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③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③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③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 문대림 의원안 : 제도 명칭 변경 반영

종전 대안 ⇨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고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이 되 며 위원 은 다음 각 회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는 사람 중 에서 농 림축산식 품부장관 이 임명 하 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명 이상 이 어 야 한다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이 되 며 위원 은 다음 각 회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는 사람 중 에서 농 림축산식 품부장관 이 임명 하 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명 이상 이 어 야 한다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이 되 며 위원 은 다음 각 회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는 사람 중 에서 농 림축산식 품부장관 이 임명 하 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명 이상 이 어 야 한다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이 되 며 위원 은 다음 각 회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는 사람 중 에서 농 림축산식 품부장관 이 임명 하 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명 이상 이 어 야 한다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이 되 며 위원 은 다음 각 회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는 사람 중 에서 농 림축산식 품부장관 이 임명 하 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명 이상 이 어 야 한다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이 되 며 위원 은 다음 각 회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는 사람 중 에서 농 림축산식 품부장관 이 임명 하 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명 이상 이 어 야 한다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이 되 며 위원 은 다음 각 회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는 사람 중 에서 농 림축산식 품부장관 이 임명 하 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 명 이상 이 어 야 한다	- 송옥주 · 여기구 · 문금주 ·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박수현 의원안 : 제도 명칭 변경
1(생략)	1(생략)	1(생략)	1(생략)	1(생략)	1(생략)	1(생략)	
2(생략)	2(생략)	2(생략)	2(생략)	2(생략)	2(생략)	2(생략)	
3 그밖에 농산물가 격인정제 도에 관 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 람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	3 그밖에 농산물가 격인정제 도에 관 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 람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	3 그밖에 농산물가 격인정제 도에 관 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 람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	3 그밖에 농산물가 격인정제 도에 관 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 람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	3 그밖에 농산물가 격인정제 도에 관 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 람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	3 그밖에 농산물가 격인정제 도에 관 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 람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	3 그밖에 농산물가 격인정제 도에 관 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 람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	

종전 대안 ⇨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고
으로 정 하는 자 각기준에 맞는 사 람	으로 정 하는 자 각기준에 맞는 사 람	으로 정 하는 자 각기준에 맞는 사 람	으로 정 하는 자 각기준에 맞는 사 람	으로 정 하는 자 각기준에 맞는 사 람	으로 정 하는 자 각기준에 맞는 사 람	으로 정 하는 자 각기준에 맞는 사 람	
④생략 =	④생략	④생략	④생략	④생략	④생략	④생략	- 종전 대안 과 동일

1)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을 고시하는 경우, 품목별 생산자단체 간 이해관계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쉽지 않고, 농업계 내부 갈등이 우려되어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이 곤란함.

(2) 행정안전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관련 위원회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5년 이내)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⁴²⁾

4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①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 설치 시에는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③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있어, 동 위원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수용여부와 연계하여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수용함에 따라 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 그 심의위원회가 동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동 위원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려는 것인데,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역시 기준가격과의 차액 보전을 통하여 농산물의 수급을 관리하거나 조절하려는 제도에 해당함.

그런데 개정안은 동 위원회에 관한 규정 외에도 농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하는 것이 행정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 중 윤준병의원안은 동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안 제5조의5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관리)위원회에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동 위원회 대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농업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 점, 이에 따라 심의사항인 대상 품목·기준가격·시장가격·차액 지급 비율 등이 신중하게 심의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항만을 별도로 심의하는 동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또한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는 동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할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동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한다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에 따른 심의사항은 ① 대상 품목, ② 기준가격, ③ 시장가격, ④ 차액 지급비율, ⑤ 적정 재배면적 등의 추계, ⑥ 대상 품목 등의 선정주기,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일곱가지 사항임.

특이사항으로는 문대림의원안에서 다른 개정안과 달리 대상품목 등의 선정주기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근거 규정에서 매년 심의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있음.

【 개정안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연번	개정안	심의사항						
		대상품목	기준가격	시장가격	차액 지급비율	적정 재배면적 등 관측	대상 품목 등의 선정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문대림의원안	○	○	○	○	○		○
2	송옥주의원안	○	○	○	○	○	○	○
3	여기구의원안	○	○	○	○	○	○	○
4	문금주의원안	○	○	○	○	○	○	○
5	이원택의원안	○	○	○	○	○	○	○
6	박수현의원안	○	○	○	○	○	○	○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2.

대상품목 등의 선정주기는 제도 운영 실태와 동 위원회의 개최 횟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으로서, 이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지, 법률에서 명시하여 정할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심의사항 중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의 경우, 농산물 수급조절 등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등에 있어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할 것임.

다만, 윤준병의원안에서 제도의 시행의무 부여 조건으로 총생산량을 활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적정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운영에 있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님.

따라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을 위한 동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사항으로 규정할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셋째, 동 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경우, 모든 개정안이 1명의 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을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제한함.

【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

연번	구분	내용
1	위원장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2	위원 정수	15명 이내 (단,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5명 이상)
3	위원 구성	① 농산물 가격 및 수급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②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2.

개정안이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므로 최소 1/3 이상의 위원이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생산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⁴³⁾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자(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 등의 선정결과에 따라 생산자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는 있어 보임.

43)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295.

또한, 개정안이 위원의 자격조건을 ① 고위공무원, ②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전문가의 세 가지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3분의 1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라는 것이므로 그 제한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에 있어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안과 같이 위원 구성을 제한할 수 있어 보임.

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 추가 등

개정안은 ① 농안기금의 용도에 ‘계약생산’,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 및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를 추가하는 한편, ② 개정안에 따라 번호가 변경된 조를 인용하는 현행법 조항의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송옥주의원안·어기구의원안·문금주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57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어기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신 설>				2의2. 제16 조 의 2 에 따 른 농 산 물 가 격 안 정 제 도 의 시 행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신 설>	1의2. 제6 조 에 따 른 계 약 생 산	2의4. 제6 조 에 따 른 계 약 생 산	1의2. 제6 조 에 따 른 계 약 생 산		1의2. 제6 조 에 따 른 계 약 생 산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2. 제9조의2, 제9조의4,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2. (현행과 같음)	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2. (현행과 같음)	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현 행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업법」 제 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업법」 제 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신 설>	2의3. 제9조 의5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제도의 운영	2의3.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의 시행	2의3. 제16조 의2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제도의 시행		2의3. 제16조 의2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제도의 시행
<신 설>		2의5. 제9조 의3에 따른 가격 폭 등 시의 소비 자 보호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기금의 대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기금을 용자받거나 대출받은 자는 용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 외의 목적에 그 용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고
제57조(기금 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에 용자또 는 대출할 수 있다	⇒	제57조(기금 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에 용자또 는 대출할 수 있다	제57조(기금 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에 용자또 는 대출할 수 있다	제57조(기금 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에 용자또 는 대출할 수 있다	제57조(기금 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에 용자또 는 대출할 수 있다	제57조(기금 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에 용자또 는 대출할 수 있다	- 윤준병· 송옥주· 여기구· 이원택 의원안 : 개정 없음 (종전 대안과 동일)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고
1. (생략) 2. (생략) <신설>		1. (생략) 2. (생략)	1. (생략) 2. (생략)	1. (생략) 2. (생략)	1. (생략) 2. (생략) 2의2. 제16 조의2에 따른 농 산물가격 안정제도 의 시행	1. (생략) 2. (생략)	- 문금주 의원안 : 다른 개정안 과 달리 제1 항에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 시행을 추가
3. ~ 6. (생략)		3. ~ 6. (생략)	3. ~ 6. (생략)	3. ~ 6. (생략)	3. ~ 6. (생략)	3. ~ 6. (생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지출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지출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지출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지출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지출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지출한다.	- 윤준병 의원안 : ① 조 번호 변경 사항(제 9조→제9조 의2, 제9조의 2→제9조의4) 반영 ②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윤준병 의원안 제9 조의3, 종전 대안 제9조 의2) 미반영
1. (생략) 1의2. 제6 조에 따 른 계약 생산		1. (생략) 1의2. 제6 조에 따 른 계약 생산	1. (생략) 2의4. 제6 조에 따 른 계약 생산	1. (생략) 1의2. 제6 조에 따 른 계약 생산	1. (생략)	1. (생략) 1의2. 제6 조에 따 른 계약 생산	
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3조 및 「종자 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 업의 관리	⇒	2. 제9조의 2, 제9조 의4, 제13 조 및 「종자 산업법」 제 22조에 따 른 사업 및 그 사 업의 관리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 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 업의 관리	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3조 및 「종자 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 업의 관리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 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 업의 관리	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3조 및 「종자산 업법」 제 22조에 따 른 사업 및 그 사 업의 관리	- 송옥주 의원안 : 가격폭등 시 의 소비자 보 호(송옥주의원 안 제9조의3, 종전 대안 제 9조의2)를 별 도의 호(제2호 의5)로 분리
2의2 (생략)		2의2 (생략)	2의2 (생략)	2의2 (생략)	2의2 (생략)	2의2 (생략)	
2의3. 제1 6조의2 에 따른 농산물		2의3. 제9 조의5에 따른 농 산물 가	2의3. 농 산물 가 격안정 제도의	2의3. 제1 6조의2 에 따른 농산물		2의3. 제1 6조의2 에 따른 농산물	- 여기구· 이원택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고
가 격 안 정 제 도 의 시 행		격 안 정 제 도 의 운 영	시 행	가 격 안 정 제 도 의 시 행		가 격 안 정 제 도 의 시 행	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신 설>			2의5. 제9 조의3에 따른 가 격 폭 등 시의 소 비자보호				- 문금주 의원안 : 개정 없음
3. ~ 5. (생 략)		3. ~ 5. (생 략)	3. ~ 5. (생 략)	3. ~ 5. (생 략)	3. ~ 5. (생 략)	3. ~ 5. (생 략)	
③ ~ ⑤ (생 략)	=	③ ~ ⑤ (생 략)	③ ~ ⑤ (생 략)	③ ~ ⑤ (생 략)	③ ~ ⑤ (생 략)	③ ~ ⑤ (생 략)	- 개정 없음 (종전 대안과 동일)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계약생산의 경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안기금 사업인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사업으로 지원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하여 수용 곤란 입장이므로, 농안기금 용도 추가에 대하여도 수용이 곤란함.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보호의 경우, 농안기금 활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경우 농안기금 재정 건전성이 저해될 것으로 보여, 농안기금 용도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함.

2) 검토의견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현황

농안기금은 「농안법」 제5장(제54조~제61조)에 설치근거를 두는 기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aT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용함.

2024년 기준, 농안기금의 수입은 계획현액이 2조 4,196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2,197억원 감소한 2조 1,999억원을 수납하였고, 지출은 2조 1,999억원을 지출하고, 64억원을 이월하며, 216억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 농안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표 】

1. 수입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계획		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D)	미수납액 (B-C-D)	계획대비 수납증감 (C-A)
	당초	변경(A)					
수입	2,394,770	2,419,570	2,203,261	2,199,892	-	3,370	△219,678

2. 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		전년이월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지출	2,394,770	2,419,570	5,285	2,424,855	2,199,892	6,367	21,5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4.

지출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일반지출로는 총 7개 단위사업에서 2조 1,512억원을 지출하였고, ② 정부내부지출로는 15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여유자금운용으로는 2,297억원을 지출하였음.

【 2024년 농안기금 지출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		전년이월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총계	2,394,770	2,419,570	5,285	2,424,855	2,199,892	6,367	21,580
일반지출	2,141,807	2,173,898	5,285	2,179,183	2,151,237	6,367	21,580
농산물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	797,837	849,895	-	849,895	834,279	252	15,364
농산물 유통개선	544,855	526,888	-	526,888	525,685	-	1,203
소비자유통 활성화	69,501	69,501	-	69,501	69,501	-	-
종자 수급조절	68,744	68,744	-	68,744	68,166	-	578
농식품 수출촉진	458,246	456,246	-	456,246	456,246	-	-
식품산업 육성	144,633	144,633	5,285	149,918	139,810	5,719	4,389
기금운영비	57,991	57,991	-	57,991	57,550	396	46
정부내부지출	15,930	15,930	-	15,930	15,930	-	-
여유자금운용	237,033	229,742	-	229,742	32,725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4.

(2)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안 제6조에서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규정, ② 안 제9조의5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③ 안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해당 사업을 농안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용도 추가사항 】

연번	개정안	농안기금 지출용도 추가사항		
		계약생산 (지원)	농산물가격 안정제도	가격 폭등 시의 소비자보호
1	윤준병의원안	○	○	
2	송옥주의원안	○	○	○
3	여기구의원안	○	○	○
4	문금주의원안		△(융자·대출)	
5	이원택의원안	○	○	○

주: 문금주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농안기금의 지출용도가 아닌 융자·대출용도에 추가함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2.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임.⁴⁴⁾

신규 제도 중 ① 계약생산 지원과 ②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모두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농안기금에서 마련하더라도 기금의 목적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가격 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의 경우, 개정안은 이를 위한 시책으로서 수매 농산물의 판매, 생산·유통 단계에서 농산물의 판매 지원, 취약계층에의 농산물 이용권 지급 등을 규정함.

‘소비자 보호’ 자체는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기금의 목적과는 일부 다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시책 중 수매 농산물의 판매와 농산물의 판매 지원을 시행하는 경우,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 외에도 농산물의 공급을 증가시켜 수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임.

따라서, 단순히 목적 자체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출 용도에서 제외할지, 시책 시행에 따라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이라는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하므로 지출용도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한편, 개정안의 자구에 대하여, 안 제6조에 따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생산을 수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을 보전하거나 지원하려는 것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계약생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안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을 농안기금 지출 용도로 추가하려는 안 제57조제2항제1호의2를 보다 구체화하여, ‘안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에 대한 손실보전 및 지원’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수입비축사업의 사후관리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입농산물관리 운용계획, 수입농산물판매실적, 사업 점검 등의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이병진 의원안 제13조의2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이병진의원안
<u><신 설></u> ※ 현행훈령 「정 부 비 축사업 관 리규정」 제 1 3 조 (수 입) ② 공사 는 제1항 에 따른 월별 수 입 및 판 매 계획,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등 이 포함 된 당해 연도 국 영 무 역 품목 등 에 대한 수입농산 물관리운 용계획을 매년 3월 말 까 지 수립하여 사업관리 기관 및 사업지원 기 관 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13조의2(비축 사업의 관리) ① 제13조제4 항에 따라 국 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 비축사업을 위 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 자”라 한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 급업체 선정, 제도개선에 관 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 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 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 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비축 사업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 는 수입비축사 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 사업자”라 한 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 체 선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 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 에 대한 수입 농산물관리운 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 립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3조의2(비축 사업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 는 수입비축사 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 사업자”라 한 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 체 선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 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 에 대한 수입 농산물관리운 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 립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3조의2(비축 사업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 는 수입비축사 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 사업자”라 한 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 체 선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 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 에 대한 수입 농산물관리운 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 립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이병진의원안
	※ 관계 조문 윤준병·여기구·이원택의원안 제9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이병진의원안은 과태료 신설 없음			
	② 위탁사업 자로부터 수 입 농 산 물 을 공급받은 자 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 입농산물판매 실적을 다음 해 상반기까 지 위탁사업 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 자로부터 수 입 농 산 물 을 공급받은 자 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 입농산물판매 실적을 다음 해 상반기까 지 위탁사업 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 자로부터 수 입 농 산 물 을 공급받은 자 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 입농산물판매 실적을 다음 해 상반기까 지 위탁사업 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농 산물을 공급 받은 자는 당 해연도 국영 무역 수입농 산물판매실적 을 다음해 상 반기까지 위 탁사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관계 조문 윤준병·여기구·이원택의원안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이병진의원안은 과태료 신설 없음			
	③ 위탁사업자 는 제2항에 따 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자 는 제2항에 따 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자 는 제2항에 따 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 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이병진의원안
	※ 관계 조문 윤준병·어기구·이원택의원안 제9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이병진의원안은 과태료 신설 없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통보받은 의견을 수렴 결과를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판매실적·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통보받은 의견을 수렴 결과를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판매실적·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통보받은 의견을 수렴 결과를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판매실적·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판매실적·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이병진 의원안	비 고
제 13 조 의 2 (비축사업 관리) ① (생 략)	≡	제 13 조 의 2 (비축사업 의 관리) ①(생 략)	제 13 조 의 2 (비축사업 관리) ① (생 략)	제 13 조 의 2 (비축사업 관리) ① (생 략)	제 13 조 의 2 (비축사업 관리) ① (생 략)	- 윤준병 의원안 : 제목 수정
② 위탁사 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 을 공급받 은 자는 당 해연도 국 영무역 수 입농산물관 매 실 적 을 다음해 상 반기 까 지 위탁사업자 에게 보고 하여야 한 다.	⇒	② 위탁사 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 을 공급받 은 자는 당 해연도 국 영무역 수 입농산물관 매 실 적 을 다음해 상 반기 까 지 위탁사업자 에게 보고 하여야 한 다.	② 위탁사 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 을 공급받 은 자는 당 해연도 국 영무역 수 입농산물관 매 실 적 을 다음해 상 반기 까 지 위탁사업자 에게 보고 하여야 한 다.	② 위탁사 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 을 공급받 은 자는 당 해연도 국 영무역 수 입농산물관 매 실 적 을 다음해 상 반기 까 지 위탁사업자 에게 보고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 농 산 물 을 공 급 받 은 자는 당해 연도 국영 무역 수입 농산물판매 실적을 다 음해 상반 기까지 위 탁사업자에 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윤준병 · 어기구 · 이원택 ·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이병진 의원안 : 자구 수정
③ (생 략)	=	③ (생 략)	③ (생 략)	③ (생 략)	③ (생 략)	- 종전 대안 과 동일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3항에 따 라 보고받 은 점검결 과를 토대 로 실수요 자, 생산 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 자의 의견 을 수렴하 여 그 결 과를 위탁 사업자에 게 통보하	⇒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3항에 따 라 보고받 은 점검결 과를 토대 로 실수요 자, 생산 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 자의 의견 을 수렴하 여 그 결 과를 위탁 사업자에 게 통보하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3항에 따 라 보고받 은 점검결 과를 토대 로 실수요 자, 생산 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 자의 의견 을 수렴하 여 그 결 과를 위탁 사업자에 게 통보하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3항에 따 라 보고받 은 점검결 과를 토대 로 실수요 자, 생산 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 자의 의견 을 수렴하 여 그 결 과를 위탁 사업자에 게 통보하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3항에 따 라 보고받 은 점검결 과를 토대 로 실수요 자, 생산 자, 농업 인 단체 등 이해관 계자 의견 수렴을 거 쳐 다음연 도 수입농 산물 관리 운용 계획	- 윤준병 · 어기구 · 이원택 ·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이병진 의원안 : 위탁사업자 에 대한 통보 삭제

종 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이병진 의원안	비 고
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 자는 통보 받은 의견 수렴 결과 를 다음연 도 수입농 산물 관리 운용 계획 에 반영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 자는 통보 받은 의견 수렴 결과 를 다음연 도 수입농 산물 관리 운용 계획 에 반영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 자는 통보 받은 의견 수렴 결과 를 다음연 도 수입농 산물 관리 운용 계획 에 반영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 자는 통보 받은 의견 수렴 결과 를 다음연 도 수입농 산물 관리 운용 계획 에 반영하 여야 한다.	에 반영하 여야 한다.	
⑤(생략)	=	⑤(생략)	⑤(생략)	⑤(생략)	⑤(생략)	- 종전 대안 과 동일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비축사업의 목적 달성 및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비축농산물의 판매 실적 보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후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수용함.

다만, 비축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만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GATT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후관리 품목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에서 ‘전체 비축농산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검토의견

1)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 현황

현행법 제13조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안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비축사업을 규정함.⁴⁵⁾

정부비축사업은 현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위탁하여 실시됨.⁴⁶⁾ 비축하는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①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구매비축사업과 ②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입비축사업으로 구분됨.

4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구매·수입·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비축용 농산물의 구매·수입·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2. 비축용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양식·선매 계약의 체결
3. 농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금금(先給金)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산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75호)」

제5조(비축사업의 위탁 및 협의회의 구성) ① 정부비축사업은 영 제12조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부비축 중 구매물량의 매입, 대금지급 등 구매부문은 그 일부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비축기지 시설(냉동·전기)의 운영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농산물의 수입은 크게 ① 국영무역(國營貿易) 방식, ② 수입권 공매 방식 및 ③ 실수요자배정 방식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 농산물 수입방식 개요 】

□ 국영무역 방식

- 추천대행기관(aT)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판매하는 방식
-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

□ 수입권공매 방식

- 관세할당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물량에 대한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 민간에게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
- 국내외 가격차가 커서 상당한 차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

□ 실수요자배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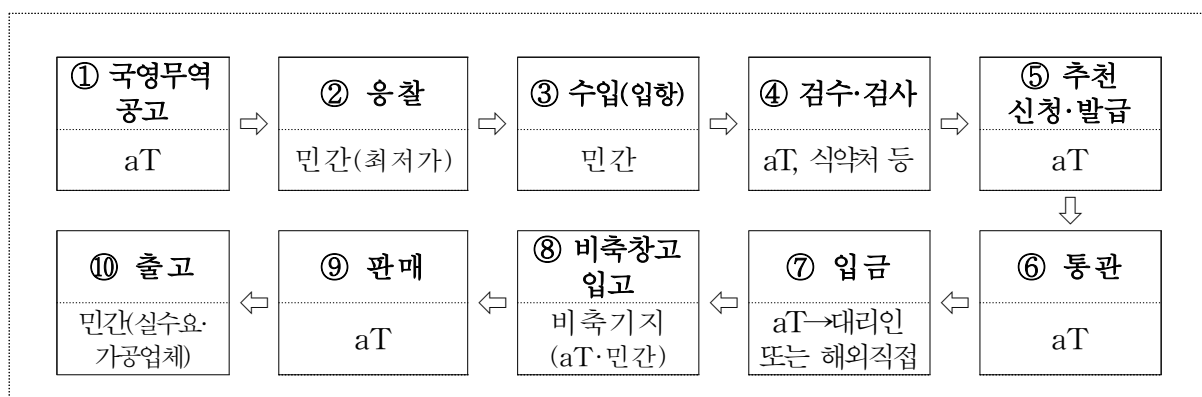
- 수입권 관리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착순으로 배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5. 23. (일부 재가공)

국영무역 방식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됨.

구체적으로는 추천대행기관인 aT가 농산물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입농산물을 도입하여 비축함.

【 국영무역 방식의 수입비축사업 절차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5. 23.

최근 5년간 aT가 국영무역 방식을 통하여 도입한 수입비축 농산물로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 등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국영무역 방식 수입농산물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고추	-	-	-	24,103	15,691
2	마늘	-	-	12,052		13,313
3	양파	-	-	-	20,141	3,318
4	참깨	103,846	117,894	179,253	143,374	226,283
5	콩(콩나물콩)	138,471	162,657	237,517	236,456	139,970
6	팥(녹두)	37,425	48,417	61,817	39,008	49,437
7	감자	-	-	6,567	6,759	3,408
8	배추	-	-	1,590	-	-
9	무	-	-	-	36	-
합계		279,742	328,968	498,796	469,877	451,4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5. 23.

현재 정부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수입비축사업에 대하여는 aT로 하여금 매년 3월말까지 월별 수입 및 판매 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중 수입비축사업 주요 관리사항 】

연번	조	주요 관리사항
1	제13조	- aT는 월별 수입 및 판매 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 등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해야 함
2	제14조	- 수입농산물 공급업체의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수급·가격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음
3	제15조	- aT는 규격에 적합한 농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현지 품위확인, 선적 상황 파악, 해외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 출장을 실시할 수 있음 - 농관원은 품목별 수입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4	제16조	- 농관원은 aT의 수입농산물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규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 흠먼지, 곰팡이 등이 많이 부착된 저품위 물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사 등 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식약처에 통보하여야 함
5	제17조	- aT는 수입농산물의 국내 항 도착 후 ① 검역본부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과 ② 식약처의 수입검사 등 국가에서 정하는 제반 통관 전 검사를 수검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인수, 반송,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작성, 2025. 6. 1.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됨.

첫째, 안 제13조의2제1항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위탁사업자인 aT로 하여금 매년 3월말까지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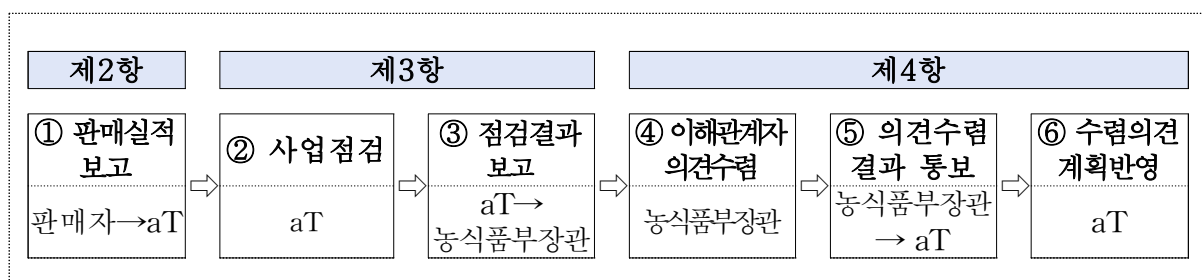
참고로, 현행 훈령은 ‘국영무역 품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①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② 그 외 품목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포함사항을 국영무역 품목으로 축소·한정함.

이에 따라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aT가 수립하는 계획에서 국영무역 외에 수입권공매나 실수요자배정 방식 등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사항이 제외될 수 있어 보임.

둘째, 안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판매실적 보고, 점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일련의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피드백(Feedback)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피드백 구조 】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

구체적으로는 ① aT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연도 판매실적을 aT에 보고하고, ② aT는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또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aT에 통보하여 수입농산물관리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비축사업이 농산물의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훈령 등 실제 제도의 시행상 모습을 바탕으로 관리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규정과 일부 대응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님.

비축사업의 법적 근거인 현행법 제13조에서는 비축용 농산물의 확보 방식을 수매·수입 등으로 구분하고는 있으나,⁴⁷⁾ 이를 바탕으로 비축사업의 유형을 수매비축사업과 수입비축사업으로 구분하지는 않음.

현재 실무적으로 비축사업의 유형을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의 사업 구분에 따른 것임.

따라서, 법률상에서 ‘수입비축사업’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농산물을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이하 “수입비축사업”이라 한다)’와 같이 먼저 ‘수입비축사업’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개정안은 관리대상 품목을 수입비축사업 중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된 품목으로만 한정하는데, 현행법은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만 규정할 뿐, 그 수입 방식을 규정하지는 않음.

현재 aT가 수입비축사업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개정안과 같이 관리 대상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만약 방식을 한정하지 않는다면, ① 방식에 관한 문언을 삭제하거나, ② 현행 훈령과 같이 ‘국영무역 등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임.

4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개정안의 자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의 조 제목은 ‘비축사업(의) 관리’인데, 실제 내용은 수매비축사업을 포함한 비축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수입비축사업에 대한 관리에만 해당함.

앞선 검토 내용과 같이 수입비축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다면, 조 제목과 내용을 대응시키기 위하여 조 제목을 ‘수입비축사업(의) 관리’로 할 수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은 “당해”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하여 법제처가 “당해”는 법령문 외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이므로, 이를 “해당”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는 의견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⁸⁾

셋째, 안 제13조의2제1항에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는데, ‘3월말’의 의미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이를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안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각각 ‘다음해’와 ‘다음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를 ‘다음 연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안 제13조의2제4항에서 의견수렴 대상으로 ‘농업인 단체’를 예시하는데, 이를 ‘농업인단체’로 붙여 쓸 필요가 있음.

48)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10판 증보판, 2021, p. 72.

9. 보고의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의 ① 위탁사업자와 ②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안 제13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90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1.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1.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관계 조문 윤준병의원안·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체 선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영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판매실적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현행 제1호와 같음)

현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2.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3.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관계 조문 윤준병의원안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②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 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판매실적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3의2.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4의2.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의2.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의2.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현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4. 제74조제1항 전 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5의2.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5의2.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5의2.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5.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9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전 대안과 동일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u>1. 제13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u> <u>2 ~ 4 (생략)</u>		<u>1. 제13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u> <u>2 ~ 4 (생략)</u>	<u>1. 제13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u> <u>2 ~ 4 (생략)</u>	<u>1. 제13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u> <u>2 ~ 4 (생략)</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1.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u> <u>2 ~ 4 (생략)</u> <u>4의2 (생략)</u> <u>5. (생략)</u> <u>5의2 (생략)</u> <u>6 ~ 7. (생략)</u>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1.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u> <u>2 ~ 4 (생략)</u> <u>4의2 (생략)</u> <u>4. (생략)</u> <u>5의2 (생략)</u> <u>6 ~ 7. (생략)</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1.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u> <u>2 ~ 4 (생략)</u> <u>4의2 (생략)</u> <u>5. (생략)</u> <u>5의2 (생략)</u> <u>6 ~ 7. (생략)</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1.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u> <u>2 ~ 4 (생략)</u> <u>4의2 (생략)</u> <u>5. (생략)</u> <u>5의2 (생략)</u> <u>6 ~ 7. (생략)</u>	- 윤준병의원안 : 종전 대안과 달리, 제 5 호 를 개정하지 않은채 제 4호로 둠 (수정필요) - 어기구·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용함.

다만, ‘위탁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사업자인 aT를 관리·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함.

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⁴⁹⁾

수입실적 관리는 민간업체의 영업비밀 유지, TRQ 운영 관련 통상분쟁 소지 등으로 인하여 그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보고 미흡으로 인하여 수탁기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어 보임.

49) aT는 개정안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위탁사업자’에 해당함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안 제13조의2에서 ① 수입비축사업 위탁사업자와 ②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과태료 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과태료 조항 신설 내용 】

연번	행정상의 의무(신설, 안 제13조의2)			과태료(신설)	
	목적	대상	의무	요건	금액
1	수입비축사업사후관리	수입비축사업위탁사업자(aT)	수입농산물관리 운용계획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고의무 미이행 또는 거짓이행	500만원 이하
2			보고받은 판매실적을 토대로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민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 판매실적 보고 [→위탁사업자(aT)]		100만원 이하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

수입비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인 안 제13조의2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제도의 핵심인 세 가지 보고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함.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보고의무의 정상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감독 수단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로 과태료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 중 안 제9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수입비축사업의 위탁사업자인데, 현재 수입비축사업을 포함한 정부비축사업의 위탁사업자는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aT임.

aT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⁵⁰⁾에 따른 위탁사업 감독권한을 가지므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보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음.

참고로, 과태료 부과는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순한 의무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금전벌인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는 입법례는 적은 것으로 보임.⁵¹⁾

따라서,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사업에 대하여 aT를 감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무이행 확보의 정도를 강력하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영역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개정안의 자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50)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③ 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5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808.

첫째, 안 제90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의무 미이행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데, 같은 조에 속한 서로 다른 항을 연속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같은 조’를 표기하지 않으므로,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윤준병의원안은 현행법 제90조제3항제3호의 호 번호를 제4호로 변경하면서, 같은 항 제4호는 호 번호를 제5호로 변경하지 않아 호 번호가 중복되고 있으므로, 다른 개정안과 같이 이를 제5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0. 부칙: 시행일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문대림의원안·송옥주의원안·어기구의원안·문금주의원안·이원택의원안·이병진의원안·박수현의원안 부칙).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어기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이병진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 과한 날부 터 시행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 과한 날부 터 시행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 과한 날부 터 시행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 과한 날부 터 시행한 다.

종 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송옥주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이병진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비 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 윤준병·문대림· 어기구·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1년) - 송옥주·문금주· 이병진·박수현의원안 : 공포 후 6개월로 변경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과의 의견 수렴과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내용으
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해 보임.

2) 해양수산부

개정안은 주로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시행일에 대하여는 별도 의견이 없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행일을 종전의 대안과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거나, 종전의 대안과 달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고, ②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③ 각종 제도들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